2016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

2016. 12.



## 제 출 문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 과제제안 : 조상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연구기관 : 한국재정학회

■ 책임연구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연구원 : 유호림(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허 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보조연구원: 권혁윤(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자문위워 : 김태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순 (동국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 정지선 외

요 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시를 포함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세에 관한 감면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행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주요 내용을 개관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고, 중국과 일본의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와 중국과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관한 규정 중에서 14개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중국의 세무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초빙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연구품질을 제고하였다. 둘째,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 발생하였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서울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감면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기타 광역자치단체 등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개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지방세제도와 지방세 감면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을 통하여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감면제도는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의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②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③ 공연장에 대한 감면, ④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⑦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⑧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⑨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⑩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⑪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⑫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⑬ 서울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⑭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이러한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주요한 문제점운 첫째, 공익적·공평성 목적의 감면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 서울시 고유의 정책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 셋째 과학기술 지원과 환경보호와 같은 미래가능환경에 대한 대비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향후 서울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는 경우 이것이 조세지원적인 성격임에 비춰볼 때 반드시 공익목적성·정책목적성·공평목적성·과세자주성 등 감면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위임조례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에 대하여 과세자주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헌법적 절차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 본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변 국인 중국과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들은 다양하고 종합적 인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재산과세 중심의 감면규정이 아닌 소득과세 중심의 감면규정을 제정하여 감면효과를 제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 를 정책목적의 지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중국의 조세감면제도를 살펴보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5개년 규획"에 근거하여 조세감면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중점적인 정책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정책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과

학기술 및 연구개발·기본 생활보장·저소득계층 지원·의료위생·환경보호 및 에너지절 약·문화사업·교육 및 취업보장·외자유치·기초건설사업 등 총 9가지 분야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감면의 전 분야에서 세액공제와 과세표준 감액 등 다양한 감면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방세 감면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직접감면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산업정책 및 교통정책·환경보호 및 오염예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과 중국과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고찰과 상술한 비과세·감면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서울시세 감면조례 14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납세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감면규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사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 ②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조세부담 및 고용증대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료종사자 및 비의료종사자 모두 포함)에 대하여 법인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주민세 종업원분 등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공연장에 대한 감면: 공연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적절한 감면규정인 것으로 판단되나,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공연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④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은 대상 지역의 환경변화로 인해 감면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되므로, 그 정확한 원인과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여 감면이 필요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있는 경우 새롭게 문화지구로 선정하여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
- ⑤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일몰 예정으로서 서울시에서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완하고 있지만,

한 가지 대안으로서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하여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5년 전인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31건과 1건의 감면실적이 있었을 뿐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임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⑦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최근 20여 년간 투자환경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20여 년 전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선 준공업지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우선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감면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 ⑧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신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때에 한시적 규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⑨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감면금액이 크지 않지만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 지원의 공공성, 감면 대상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항목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전통시장지원을 위 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고려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등에 대 한 감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고령화·청년실업·소득양극화 등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그 정책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규정을 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단편적인 감면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취득세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보유과세및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직접감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감면규정을 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①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종전 조례의 경과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두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를 파악하여 감면대상자가 존재할 때까지는 계속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 ②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동 조문이 2016 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대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산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직접감면까지 종 합적 감면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① 서울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서울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각 기초자치단체 간의 감면조례 규정이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조세공평을 훼손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울시가 각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의체를 조직하여 과도한 조세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고 중복적인 감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④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치단체별 세액공제액이 합리적 근거 없이 차 별적으로 공제되고 있으므로. 우편송달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제액을 통일하고 인상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운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개요	···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
	2.	연구수행 내용 및 방법	··· 2
		가. 연구수행 내용	···· 2
		나. 연구방법	···· 2
	3.	기대효과	··· 3
II.	メ	l울시세 감면조례의 현황 및 문제점······	4
	1.	서울시세 비과세·감면 현황	··· 4
		가.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4
		나. 감면조례의 규제제도	6
		다. 제도현황	9
		라. 운영현황	
	2.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 분석	14
		가. 현행 규정의 분석	· 14
		나. 각급 광역자치단체 감면조례와의 비교검토	· 36
ΙΙΙ	[. =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지방세 감면 현황과 시사점·	39
	1.	중국	39
		가. 중국의 조세제도 개관	. 39
		나. 중국의 지방세 감면제도 현황	.49
		다. 중국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사점	
	2.	일본	66
		가. 일본의 지방세제도 개관	66
		나.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 현황	86
		다.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사점	. 95

IV.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98
1.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	98
가. 공익적·공평성 목적의 감면정책 부족	98
나. 서울시 고유 정책 활성화 및 지원정책 부족	98
다. 미래가능환경 대비정책 부족	99
라. 감면방식의 다각화 및 효율화 미흡	99
마. 감면대상 세목의 특정화 및 집중화	99
2. 중국과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사점	100
가.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와 감면방법	100
나. 소득과세 중심의 직접적인 지방세 감면	101
다.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지방세 감면	102
라. 조세감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104
3.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05
가. 개선의 원칙과 방향	
나. 구체적 개선방안	106
V. 요약 및 결론	114
참고문헌	118

## 표목 차

〈표-1〉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의 비교	···· 5
〈표-2〉서울시 시세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9
〈표-3〉서울시 시세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 11
〈표-4〉서울시 시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 ······	· 12
〈표-5〉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세목별 감면 현황	·12
〈표-6〉서울시 시세 징수액 대비 감면조례규정에 의한 감면율	·13
〈표-7〉서울시 시세 비과세·감면 부문별 현황	· 13
〈표-8〉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 15
〈표-9〉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 16
〈표-10〉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 17
〈표-ll〉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추이(2011~2015년) ····································	· 17
〈표-12〉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 19
〈표-13〉 주요 시도별 세액공제액 비교	·20
〈표-14〉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21
〈표-15〉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22
〈표-16〉공연장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24
〈표-17〉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24
〈표-18〉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26
〈표-19〉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	·26
〈표-20〉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	· 27
〈표-21〉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27
〈표-22〉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	· 29
〈표-23〉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29

〈표-24〉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30
〈噩-25〉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31
〈표-26〉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31
〈표-27〉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32
〈표-28〉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추이(2013~2015년)	33
〈표-29〉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33
〈표-30〉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35
〈표-31〉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35
〈噩-32〉	도쿄도의 지방세 감면 내용 요약	84
〈표-33〉	송달 및 납부관련 세액공제 개선안1	13

## 그림목차

〈그림-1〉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	36
〈그림-2〉	중국	세법의	법원성	42
〈그릮-3〉	현햇	일본의	조세제도 개관	66

#### I. 서 론

#### 1. 연구개요

#### 가. 연구의 배경

2010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세에 관한 감면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서울시도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약 5년이 경과한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제정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① 동일한 세목에 대한 감면규정이 각 지역별로 상이하고, ② 광역자치단체의 감면조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수권하여 제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감면조례 간의 정합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③ 법률체계가 미비되어 있고 법원성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각 감면대상간의 조세형평이 훼손되고 세수입이 일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학적으로 비과세 및 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은 공익목적·정책목적·공평목적·과세자주 권 목적 및 기타의 합리적인 정책목적에 기초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으며, 주요 국가의 비과세와 감면에 관한 규정들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세 감면조례를 개선하는 때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다.

상기 원칙에 따라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이 부족하고, ② 서울시의 중점정책의 달성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③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정책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④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과 위임조례에 의해 자주입법이 제한되고 있어 비과세 및 감면에 내재하는 기본적인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행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여 조세 공평주의가 훼손되거나 세수입이 일실될 우려가 있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법률체계가 미비 되어있고 법원성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 둘째, 동일 세목에 대한 감면규정이 기타 광역자치단체와 상이하거나 불비되어 있다. 셋째,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수권하여 제정된 각 기초자치단체의 감면조례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 넷째, 서울시의 특성화 또는 경제발전 등 거시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지방세 감면제도를 분석한 후 그 시사점에 기초하여 현행 14개에 이르는 서울시세 감면 규정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와 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등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세제 및 지방세 감면제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분석내용을 기초로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14개의 감면규정 전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최종 결론을 제시하였다.

#### 2. 연구수행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수행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와 서울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현행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한후,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련 규정과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및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로 지방세 감면조례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분석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세무전 문가를 연구진으로 초빙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품질을 제고하도록 한 다.

둘째, 서울시 감면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사례들을 수집하고, 동 사례에 대한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측면의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셋째,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와 서울시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감면조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중 6개 광역도시와 서울시의 인접지역인경기도의 지방세 감면조례 및 각급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넷째,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지방세제도와 지방세 감면제도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3.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내용을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감면조례와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운영효율을 제 고할 수 있다.

둘째, 서울시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현행 서울시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현황 관련 규정과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제안하여, 향후 서울시에서 감면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 관련 정책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 II.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현황 및 문제점

#### 1. 서울시세 비과세·감면 현황

#### 가.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란 중과세제도와 더불어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세제의 일환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에 의해 납세자에게 정책이 의도하는 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과세와 감면은 모두 조세지출로서 특정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양자 간에는 발생원인과 행정적인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 1) 납세의무자 측면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신고나 부과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비과세는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감면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 또는 확정되었지만,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해 준다는 점에서 비과세와는 차이가 있다.

#### 2) 입법적 측면

비과세는 세법의 내적 동기를 가지고 사전적 또는 입법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감면은 세법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사후적 또는 정책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 3) 구현방법 측면

비과세는 과세관청의 확인만으로 구현된다. 이에 반하여 감면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필요로 한다.

〈표-1〉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의 비교

			비과세	감면
부담측면		납세의무	불성립	성립
		결과	경제적 부담 변동	경제적 부담 변동
		입법동기	세법 내적 동기	세법 외적 동기
	입법	목적	사전적·입법정책적 고려	사후적·행정·정책적 고려
		입법형식	법률	법률, 조례
구현측면	절차	적용원리	원칙: 납세의무 성립 부인	원칙: 징수권(청구권) 부인
			부과권 회복규정 필요,	징수권 회복규정 불필요,
		근거	부과권 회복규정이 없는 경우	감면처리 시 간접적으로
			부과권 행사 불가	부과권 존재 확인
	구현방법	다시 지 교나게	고 비교사이 하이	납세자 신청주의
		당사자관계	과세관청의 확인	(협력의무 존재)

출처: 임재근(2003)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등 다양한 근거법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종전 단일법 체계였던 「지방세법」이 2011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의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다.

조례에는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감면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세, 구세 감면조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의 범위는 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면서 그동안 감면조례의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허가제도는 폐지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감면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많은 규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실체적 규제제도와 절차적 규제제도 및 사후적 규제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실체적 규제제도(절대적 조례감면 금지)에는 감면조례의 제정대상 범위의 법정화·감면 총량제·「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조례 확대 금지·중과세 배제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절차적 규제제도에는 조세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조례규칙심의회 심의·지방자치단체장 재의요구·대법원 제소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사후

적 규제제도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조례감면액을 100%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대 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지역의 개발이나 특정산업 또는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감면조례로 감면할 수 없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과 그부담으로서의 지방세의 규모를 정하도록 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주민들의 세부담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감면이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세 경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등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도한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나. 감면조례의 규제제도

현행 감면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감면조례와 관련된 규제제도 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1) 감면총량제

감면총량제란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감면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제를 폐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을 방지하는 데 도입취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해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총량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당초 총량액에서 초과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소하거나 조정하여 산출된 감면총량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감면의 금지와 축소

#### (1) 감면 확대 금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미 감면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감면을 확대할 수 없다. 그러나 감면확대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면대상자 추가·감면대상 추가·감면율 인상·감면기간 연장·감면세목 추가 등 어떤 것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다.

#### (2) 감면축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면사항을 감면조례로 축소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가 된다. 다만, 개별적으로 기본적인 감면율을 법률로 정하면서 조례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감면을 축소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감면대상자의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율을 50%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 있다.

#### (3) 절대적 감면 금지

#### ① 중과세 배제 금지

감면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감면을 할 수 없다. 본점 및 주사무소·비도시형 공장·대도시내 법인 부동산·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골프장·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대도시내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감면조례에 의하여 중과세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 ② 과세대상 구분전환 금지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분리과세로 나누어 과세되고 있다. 감면조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을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로 전환하거나 별도합산 과세 대상을 분리과세로 전환할 수 없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사항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 세 감면 등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면조례로 감면 을 할 수 없다.

#### (4) 감면금지의 효력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감면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므로 해당 조례의 규정은 무효가 될 것이다.1)

다만, 감면조례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저촉되는 규정만 무효로 해야 할 것이다.

#### (5) 지방교부세제도에 의한 규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감면조례에 의한지방세 감면액을 반영하고 있어,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전전연도의 감면조례에의한 감면액의 100%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수록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므로,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적게 교부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전전연도분'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감면 후 2년이 지나서 반영하게 된다.

<sup>1)</sup> 김태호(2012)

#### 다. 제도현황

현재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14개이다((표-2) 참조). 2011. 1. 1. 이전까지는 총 6장 38개의 조문으로 「서울시 시세감면조례」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세법」이 3개로 분법되어 시행되면서 국가 정책목적의 전국 공통 감면사항이 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시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도 정비되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수출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이 서울시 감면조례에서 제외되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제2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제3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제4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제6장) 등으로 나누어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구분 없이 총 23개 조문, 14개의 감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2〉서울시 시세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조문	대상 세목 (감면율)	감면내용
1	제2조(장애인 소유 자 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 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 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 제
2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 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20%) 재산세 도시지역분(50%)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
3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지역 자원시설세를 면제

4	제5조(문화지구 내 권 장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50%)	"인사동 문화지구" 및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관련 조례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 득세를 경감하고,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 간 재산세를 경감
5	제6조(승용차요일제 참 여 자동차에 대한 감 면)	자동차세(5%)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
6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 (100%, 50%)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취득세를 면제, 그 다음 5년간 경감
7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 면)	취득세(50%)	준공업 지역 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 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 취득세를 경감
8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도시지역분(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관련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 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재산세와 지역자 원시설세를 면제
9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10	제12조(사회적 협동조 합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
11	제13조(주택재개발 등 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 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 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12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 득세 (25% 또는 15%추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 한법」 에 따른 경감 외에 추가적으로 취 득세를 경감

13	제15조(서울시분 재산	재산세	서울시의 관할구역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
13	세에 대한 감면)	(구세 감면조례)	른 서울시분 재산세의 감면
14	제 16조(자동계 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자동계좌이체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고지서 1장당 500원)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여부에 따 라 세액공제

### 라. 운영현황

#### 1) 세목별 시세 비과세·감면 현황

최근  $5년(2011\sim2015년)$ 간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정에 의한 서울시 시세의 세목 별 총 감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서울시 시세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1년(결산)	비	'12년(결산)	비	'13년(결산)	비	'14년(결산)	비	'15년(결산)	비
		중		중		중		중		중
총 계	2,571,277,772,631	100	2,094,674,018,815	100	2,293,342,528,765	100	1,441,495,266,364	100	1,417,450,767,692	100
보통세	2,546,989,430,696	99.1	2,076,916,912,677	99.2	2,274,393,455,079	99.2	1,419,811,373,608	98.5	1,395,605,289,068	98.5
취득세	2,135,337,405,425	83.0	1,612,991,639,240	77.0	1,796,988,289,280	78.4	941,133,226,930	65.3	919,437,774,760	64.9
등록면허세	40,040,450	0.0	0	0.0	0	0.0	0	0.0	0	0.0
주민세	8,726,772,514	0.3	9,158,880,200	0.4	9,776,453,140	0.4	77,848,937,810	5.4	310,600	0.0
지방소득세	62,167,484,814	2.4	64,917,928,889	3.1	66,720,231,473	2.9	1,018,717,534	0.1	69,101,590,594	4.9
재산세	303,426,180,113	11.8	354,744,106,618	16.9	365,867,000,299	16.0	363,796,502,827	25.2	372,041,611,489	26.2
자동차세	37,291,547,380	1.5	35,104,357,730	1.7	35,041,480,887	1.5	36,013,988,507	2.5	35,024,001,625	2.5
목적세	24,288,341,935	0.9	17,757,106,138	0.8	18,949,073,686	0.8	21,683,892,756	1.5	21,845,478,624	1.5
지역자원사설세	17,034,845,793	0.7	17,757,106,138	0.8	18,949,073,686	0.8	21,683,892,756	1.5	21,845,478,624	1.5
도시계획세	7,253,496,142	0.3	0	0.0	0	0.0	0	0.0	0	0.0

자료: 서울시

총 시세 징수액 대비 총 비과세·감면액으로 감면율을 계산하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평균 13.4%의 감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표-4〉참조).

〈표-4〉서울시 시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

(단위: 원, %)

	구 분	'11년(결산)	'12년(결산)	'13년(결산)	'14년(결산)	'15년(결산)
비	과세 · 감면액(A)	2,571,277,772,631	2,094,674,018,815	2,293,342,528,765	1,441,495,266,364	1,417,450,767,692
	비과세	362,001,162,357	372,122,924,569	388,437,479,309	399,726,818,390	400,498,961,767
	감면	2,209,276,610,274	1,722,551,094,246	1,904,905,049,456	1,041,768,447,974	1,016,951,805,925
,	시세 징수액(B)	11,698,959,962,000	12,244,119,111,000	11,791,579,313,000	13,249,613,093,000	15,624,420,866,258
	비과세·감면율 (A/A+B)	18.0	14.6	16.3	9.8	8.3

자료: 서울시

 $\langle \Xi - 3 \rangle$ 의 총 감면액 중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최근  $5년(2011 \sim 2015년)$ 간 세목별 감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세목별 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1년(결산)	비중	12년(결산)	비중	13년(결산)	비중	14년(결산)	비중	15년(결산)	비 중
	총 계	261,413,093,885	100.0	16,958,285,527	100.0	8,959,868,197	100.0	7,187,969,608	100	7,005,689,945	100
	보통세	259,972,026,239	99.4	16,945,790,642	99.9	8,945,917,702	99.8	7,157,373,130	99.6	6,974,529,580	99.6
	취득세	222,722,299,000	85.2	7,996,576,080	47.2	1,296,641,070	14.5	456,119,650	6.3	859,487,630	12.3
	등록면허세	0	0.0	0	0.0	0	0.0	0	0.0	0	0.0
	주민세	150,000	0.0	0	0.0	0	0.0	0	0.0	0	0.0
	지방소득세	0	0.0	0	0.0	0	0.0	0	0.0	0	0.0
	재산세	12,081,098,179	4.6	82,188,672	0.5	137,701,838	1.5	175,050,294	2.4	292,025,132	4.2
	자동차세	25,168,479,060	9.6	8,867,025,890	52.3	7,511,574,794	83.8	6,526,203,186	90.8	5,823,016,818	83.1
	목적세	1,441,067,646	0.6	12,494,885	0.1	13,950,495	0.2	30,596,478	0.4	31,160,365	0.4
	지역자원시설세	1,384,658,405	0.5	12,494,885	0.1	13,950,495	0.2	30,596,478	0.4	31,160,365	0.4
	도시계획세	56,409,241	0.0	0	0.0	0	0.0	0	0.0	0	0.0

자료: 서울시

총 시세 징수액 대비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으로 감면율을 계산하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평균 0.5%의 감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표-6〉 참조).

#### 〈표-6〉서울시 시세 징수액 대비 감면조례규정에 의한 감면율

(단위: 원, %)

구 분	'11년(결산)	'12년(결산)	'13년(결산)	'14년(결산)	'15년(결산)
감면액(A)	261,413,093,885	16,958,285,527	8,959,868,197	7,187,969,608	7,005,689,945
시세 징수액(B)	11,698,959,962,000	12,244,119,111,000	11,791,579,313,000	13,249,613,093,000	15,624,420,866,258
감면율 (A/A+B)	2.19	0.14	0.08	0.05	0.04

자료: 서울시

#### 2) 부문별 시세 비과세·감면 현황

최근 6년(2011~2016년)간 서울시 시세의 비과세·감면 현황을 목적에 따라 부문 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7)과 같다. 사회복지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지원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감면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 〈표-7〉서울시 시세 비과세·감면 부문별 현황

(단위: 백만 원)

	분야	내용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추계
		합 계	2,571,278	2,094,674	2,293,343	1,441,495	1,417,451	1,284,317
1	일반 공공행정	○ 지방자단체 등에 대한 비교세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사유도로 · 하천 · 구거 등에 대한 감면	367,550	247,299	266,830	305,845	263,820	262,221
2	공공질서 및 안전	○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364	267	1,848	3,902	4,611	5,468
3	교육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관 비교세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04,680	177,310	124,238	121,977	118,934	110,646
4	문화 · 관광	○ 종교 목적에 대한 부동산 감면 ○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감면 ○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감면	53,366	55,574	60,909	54,143	51,076	58,002
5	환경보호	○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805	3,984	2,544	9,580	4,485	13,365
6	시회복지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출신장려 ·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감면 ○ 사회복지법인 대한 비과세	1,343,893	822,097	1,026,453	159,140	191,558	193,088

7	보건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6,353	6,707	9,267	9,281	3,302	3,281
8	농림해양수산	<ul><li>○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li></ul>	3,223	32,991	3,505	6,159	1,623	3,188
9	신업: 중소기업	○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306,678	304,729	337,768	291,537	274,525	212,328
10	수송 · 교통	○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43,595	52,774	90,400	52,037	84,544	89,683
11	국토 및 지역개발	<ul><li>○ 도시및주가환경장비사업 관련 감면</li><li>○ 산업단자에 대한 감면</li><li>○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면</li></ul>	169,438	216,077	159,760	246,046	212,474	146,268
12	과학기술	○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김면	-	-	-	-	-	4
13	국가	○ 국가에 대한 비과세	103,638	108,295	114,035	106,891	108,160	111,451
14	외국	○ 외국정부에 대한 비과세	7,305	2,054	1,873	2,101	1,967	2,498
15	기타	○ 일반법인간 합병·상속재산 비과세	60,389	64,516	93,913	72,858	96,370	72,826

자료: 서울시

#### 2.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 분석

#### 가. 현행 규정의 분석

이하에서는 현행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감면규정의 내용과 연혁 및 감면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규정과 비교하기로 한다. 각 감면규정은 성격에 따라 위임조례와 임의조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여기서 위임조례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서 감면요건을 정하면서 감면율이나 기한 등의 감면 요건 일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그에 따라 제정한 조례를 의미하고, 임의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의미한다.

#### 1) 위임조례

#### (1)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현행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위임근거 법률은 「지방 세특례제한법」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이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018.12.31.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된다. 이때 감면율은 취득세의 경우 서울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시 지역 20%, 그 외의 지역 4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율로, 재산세의 경우 75%(2017.1.1.~2018.12.31.은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율로 경감한다.

서울시세 감면조례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20% 경감하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50%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표-8)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취 ⊩ ▼	20	시청 소재지 20 그 외 지역	시청 소재지 20 그 외 지역	12.5	시청 소재지 20 그 외 지역	시청 소재지 20 그 외 지역	12.5	도청 소재지 20 그 외 지역 40	시청 소재지 - 그 외 지역 40	도청 소재지 20 그 외 지역 40
	재 산 세	50	_	_	-	_	_	-	_	75	75 (50*)

<sup>\* 2017</sup>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년까지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경감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게 되었고,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지방세 경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조례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25%(2015년 1월부터 20%) 경감하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5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최근 5년간의 감면추이를 보면 2011년 31건의 감면만이 파악되는데, 이는 2012년부터 동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으로 이관되면서 이후의 감면실적이 지특법상 통계로 잡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특법상 통계에 따르면 ('12년) 73백만원 → ('13년) 54백만원 → ('14년) 60백만원 → ('15년) 58백만원의 감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15년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감면대상 의료기관 총 9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langle \Xi - 9 \rangle$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추이 $(2011 \sim 2015 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1	취득세(20) 도시지역분 재산세(50)	31	23,468,976
2012	고시시력군 세년제(50) 지역자원시설세(50)	0	0
2013	최도베(20)	0	0
2014	취득세(20) 도시지역분 재산세(50)	0	0
2015	그 그 기자 국 군 세 근제(50)	0	0

자료: 서울시

#### (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위임근거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4항이다.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1998.11.17.부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시행하였으며, 1999.5.24.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주요 내용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경감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에는 1999.3.20. 신설되어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7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경감으로 감면정도가 현행보다 낮았다.

〈표-10〉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율(%)	50/100 (5년/ 10년)	50/100 (5년/ 15년)	30/50/ 100 (3년/ 7년/ 15년)	30/50/ 100 (3년/ 7년/ 10년/ 15년)	50/100 (10년/ 15년)	50/100 (10년/ 15년)	30/50/ 100 (3년/ 7년/ 15년)	30/50/ 100 (3년/ 5년/ 7년)	30/50/ 100 (3년/ 5년/ 7년/ 10년/ 15년)	100 (10년/ 15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은 50% 경감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의 감면추이를 보면 2011년 31건의 감면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감면현황이 없다가 2015년 1건의 감면이 확인된다.

〈표-11〉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추이(2011~2015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1		31	30,222,150
2012		0	0
2013	취득세(100)	0	0
2014		0	0
2015		1	133,320

자료: 서울시

주지하다시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동 감면규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전인 2011년 과 2015년에 각각 31건과 1건의 감면실적이 있을 뿐 2012년부터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 감면규정이 임의조례가 아닌 위임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상위법에 의해그 운용이 제한적이고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일부 감면요건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위임조례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별도의 감면규정을 둘 수 없어 경직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세 감면조례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임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상술한 것처럼 위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면 현행 취득세에 관한 감면이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시내에서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조세부담도 경감할 수 있게 되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 (3)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현행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위임근거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항이다.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 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추가 경감율은 취득세의 100분의 25(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 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 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외에 추가적으로 25% 또는 15%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다. 2016.1.7. 신설된 조항으로서 감면실적에 관한 통계는 아직 없다.

인천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 단위 지역에

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의 경감을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감면규정은 위임조례에 속하기 때문에 다소 경직하고 제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2〉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율	25 (15)	25 (15)	25 (15)	_	25 (15)	_	25 (15)	25 (15)	25 (15)	_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위임근거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이다.

제1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 감면사항으로서 법률에서 감면요건을 정하면서 감면율이나 기한 등 감면요건의 일부의 제정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위임조례로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여부에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동 규정은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비용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0.10.27. 신설되었다. 현행 감면조례 규정에따르면 자동계좌이체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전자송달 + 자동계좌이체의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 전자송달까지 같이 신청할 경우 500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동계좌이

체만 신청할 경우 500원, 전자송달까지 같이 신청할 경우 1,00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의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별 세액공제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동규정이 자치단체에 감면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위임조례라 하더라도 성격이 유사한 여러 전자고지·전자납부 방식에 대한 공제액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액 자체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표-13) 주요 시도별 세액공제액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자동계좌이체	150원	150원	300원	150원	150원	150원	150원	150원	150원	500원
전자송달+ 자동계좌이체	500원	500원	7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300원	300원	1,000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임의조례

(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현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를 대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류자동차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100% 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 시세감면규정 중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감면 다음으로 감면비중이 높은 항목이다.

〈표-14〉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1		118,419	17,332,442,780		
2012	÷! ⊏ ≀!!(4.00)	1,005	135,683,680		
2013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875	140,817,980		
2014		1,542	183,412,611		
2015		1,294	185,895,217		

자료: 서울시

동 감면은 「서울시세 감면조례」제정 당시(1994.12.31.)부터 있었던 규정으로 최초로 시행된 때에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더 넓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이 적용대상이었다. 그런데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제17조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규정되고 적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자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도

록 규정한 것이다. 동 감면조항은 서울시 외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유사한 형태로 우영하고 있다.

〈표-15〉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취득세만 면제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적용 대상차량의 배기량을 2,000cc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배기량을 제한(2,000cc 이하)하여 비과세·감면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및 자유로운 이동권에 대한 불합리한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의 취지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배기량에 따른 제한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감면조례의 특성상 감면 조례에서만 배기량 제한을 풀게 되면 모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사항과 모순되고 해당 납세자간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로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 자동차 감면 관련 규정2)과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규정3)에서도 동일한 제한을 두고 있다.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서울시는 감면

<sup>2)</su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up>1.</sup>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sup>2.</sup>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sup>3.</sup>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sup>4.</sup>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sup>3)</su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조례에서 그 범위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부산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세종특별자 치시 시세 감면 조례의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와 같은 규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동 규정은 법문에서 어려운 표현이나 잘못된 표현 또는 혼란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부자연스럽다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동조 제2항의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가 "공동으로 등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더 폭넓게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동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의 문장구성이 다소 부자연스러우므로 납세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동 규정이 위임조례의 감면확대금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장애인 1~3급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고, 감면조례에서는 시각장애인 4급 해당자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감면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보다 확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관련 법률에 확대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확대금지의 범위가 확대해석되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감면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요소를 제거하고 감면규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 감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up>1.</sup>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sup>2.</sup>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sup>3.</sup>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sup>4.</sup>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류자동차

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사항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2) 공연장에 대한 감면

현행 공연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 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연장에 대한 감면은 「공연법」에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 시세감면규정 중 감면건수는 많지 않지만 감면금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항목이다.

〈표-16〉 공연장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1		35	292,550,515
2012	취득세(100)	35	1,111,760,672
2013	도시지역분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38	971,116,930
2014		88	167,798,987
2015		101	695,626,088

자료: 서울시

공연장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 외의 광역시 지역에서는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두고 있다.

(표-17)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공연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와	100		_	_		_	_	_	_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_	_	_	_	_	_	_	_	100*
감면율(%)										

\*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동 규정은 서울시 시세 감면 규정 중 꾸준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으로서, 대형 공연장 등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감면규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하에서 살펴볼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관련 감면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공연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객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라는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3)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현행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 " 안에서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 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은 "인사동 문화지구" 및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관련 조례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간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것이다. 동 규정은 2004.5.25.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2006.5.4. 대학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이 추가되면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규정되었다. 서울시 외에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와 경기도(헤이리 문화지구) 등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6.22.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표-18)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취 득 세	50			50				50		50
대한 감면율(%)	재 산 세	50	_	_	_	_	_	_	-	_	5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은 앞서 살펴본 공연장에 대한 감면 규정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시세 감면 규정 중 감면 건수는 많지 않지만 감면금액 규모는 큰 항목이다. 최근의 감면추이에 있어서 공연장에 대한 감면 규정과 다른 점은 대상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표-19〉참조).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에서 지난 10여 년동안 문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旣) 지정하였던 문화지구의 문화적 확경 또는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9〉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1	취득세(50) 도시지역분 재산세(50)	139	480,679,839
2012		104	718,499,329
2013		101	115,941,473
2014		37	433,913,689
2015		51	213,335,897

자료: 서울시

(4)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현행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이를 추징한다.
-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돗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5% 경감하는 것이다. 서울시 시세감면규정 중 감면건수와 감면 금액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다.

⟨표-20⟩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1		1,069,476	9,307,148,540			
2012		1,047,318	8,745,518,340			
2013	자동차세(5)	934,221	7,401,922,004			
2014		822,902 6,360,617,56				
2015		737,368	5,671,611,571			

자료: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5.12.29. 관련 규정이 시세 감면 조례에 신설되면서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은 2016.1.7. 개정을 통해 감면 기한을 2016.12.31.까지로 제한하는 일몰규정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현재 서울시 외에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광역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 5% 또는 10%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표-21)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율(%)	5	10	5	5	_	10	5	_	_	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실효성과 참여율이 저조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인프라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동 감면 규정은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2014년 5월 기준서울 시내 자가용 승용차 236만대 중 80만대(34%)가 등록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혜택으로는 자동차세 5% 감면의 세제혜택 외에도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주차요금 20~3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과 참여율이 저조하여 그 시행효과가 하루 통행량 750만1,989대 중 1.1%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감면 혜택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감독에 대한 인프라 또한 미흡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적발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5)

이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혜택을 일몰제로 변경하고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개선안에 따라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폐지되며, 민간부문의 혜택(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 \sim 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시 가점부여 등)만 유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경우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서민증세로 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동 감면규정의 폐지이후 발생 가능한 도로혼잡도와 자동차 배기가스의 증가 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5)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현행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다음과 같다.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 이외

<sup>4)</sup>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재설계를 위한 공청회 자료; 서울연구원 보고서

<sup>5)</sup> 실제로 서울시 도로 길이가 8천 214km,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가 약 75만대에 달하는데 반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하다. 서울시 박진형 의원실 자료

### 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준공업 지역 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이다. 감면대상과 감면규정의 특성상 감면건수와 금액이 매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22)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1		956	33,091,805,510
2012		9	53,892,150
2013	취득세(50)	33	260,713,350
2014		1	17,140,670
2015		3	208,274,620

자료: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1998.4.30.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신설되어 도입되었다. 취득세(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주는 내용과 사후추 지 사유 모두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외에 경기도에서만 동일한 감면 제도를 시행중이다.

〈표-23〉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율(%)	50	_	_	_	-	-	-	50	-	_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구로·금천·성동·도봉·강서·양천구 등 7개의 자치구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총 감면건수가 37건에 불과하고 감면세액도 4억8천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10여 년간 자유주의경제체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서울시내 준공업지구의 투자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글로벌 분업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는 단순제조업 중심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여전히 동 감면규정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등 서울시의 관련 정책이 산업구조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6)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관련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동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은 최근 5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표-24〉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1	- 도시지역분 재산세(100) - 지역자원시설세(100)	0	0
2012		0	0
2013		0	0
2014		0	0
2015		0	0

자료: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1994.12.31. 서울시세 감면조례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현재 서울시 외에 대부분의 광역시 등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으나,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표-25〉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 시설세 감면율(%)	100	_	_	_	_	_	_	_	_	_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현행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 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동감면 조항은 감면대상세목과 건수에 비해 금액은 크지 않은 항목이다.

〈표-26〉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1		85	116,749,470
2012	취득세(100)	45	20,171,376
2013	도시지역분 재산세(100)	66	19,896,280
2014	지역자원시설세(100)	83	25,086,086
2015		81	30,813,232

자료: 서울시

1997.3.20.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면서 재래시장 정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시작되었으며, 관련 법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이 2010.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시세감면조례상 규정도 2011.1.1.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되었다.

〈표-27〉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up>\*</sup>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경감규정이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현행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이다. 동 감면 규정은 2013.8.1.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 및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은 물론 사회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신설되었다.

감면 규정 도입 이후 감면 실적은 없는 상태인데,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규모가 아직은 사업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28〉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추이(2013~2015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3		0	0		
2014	취득세(50)	0	0		
2015		0	0		

자료: 서울시

현재 서울시 외의 광역자치단체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경감규정이 없다.

〈표-29〉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50	_	-	-	_	-	-	-	-	_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유사한 사례로 부산광역시에서 2012.2.22.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14.1.1.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생력 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다.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상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은 예비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다.

최근 서울시는 자치구들과 협의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에 대한 혜택 외에 도 최저세액을 낮추고 등록면허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증자(자본증액)가 이뤄질 때마다 출자금의 0.2%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최저세액(11만2500원)의 적용으로 실질적으

로는 0.2% 이상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비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강남구와 동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수용해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서구(2017.1.1. 시행), 서대문구(2016.11.9. 시행), 성북구(2016.10.27. 시행), 영등포구(2016.7.1. 시행) 등이 구세 개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감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최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규정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6)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고령화·청년실업·소득양극화 등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그 정책목적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세감면규정을 제정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혜택이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감면에 불과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9)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현행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 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동 감면 규정은 서울시세 감면조례 제정 당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규정되었으며, 1997.12.2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된 이후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재개발

<sup>6)</sup>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1500035&wlog\_tag3=naver 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음.

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경과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계속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기 위해 2011.7.28.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규정되었다.

법령 연혁의 특성상 2011년 시세감면조례 신설(재규정) 초기에는 감면실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감면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표-30⟩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년)

연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건수(건)	금액(원)		
2011		1,516	12,492,695,360		
2012		352	992,610,560		
2013	취득세(100)	7	9,536,580		
2014		0	0		
2015		0	0		

자료: 서울시

서울시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주택재개발에 대한 취득세 경감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인천광역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표-31〉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제주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100	_	_	100	_	_	-	_	-	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10) 서울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현행 서울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서울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서울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

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의 관할구역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서울시분 재산세의 감면을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경감하는 것이다. 서울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11.1.1.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를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 나. 각급 광역자치단체 감면조례와의 비교검토

현행「서울시 시세감면조례」는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기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지방세 감면조례와 비교하면 조문의 구성에 있어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경우 총 23개의 조문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종교단체의 의료업·공연장·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외국인 투자유치·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도시정비사업·전통시장·사회적 협동조합·주택재개발·산업단지·서울시분 재산세·자동계좌이체 등 14개 분야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기타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각각 최소 15 개의 조문(대전)에서 최대 24개의 조문(대구)을 시행 중에 있는 바, 장애인소유 자동차·종교단체의 의료업·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외국인 투자유치·전통시장·주택재개발·산업단지·자동계좌이체 등 9개 분야를 제외하면 각각 모두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의 경우 총 23개의 조문 중 상술한 「서울시세 감면조례」와 공통적으로 감면하고 있는 9개 분야 이외에 지역특산품·관광단지 개발시행자·고용우수기업·예비사회적기업·연구개발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금융중심지 창업기업·부산항만공사 등 부산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7개 분야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대구의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에서도 「서울시세 감면조례」와 공통적으로 감면하고 있는 9개 분야 이외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벤처기업·우수향토기업·고용창출기업·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대구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8개 분야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기타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대체로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감면규정 이외에,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광주, 대전)·물류단지(울산, 대전)에 대한 감면·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울산, 인천)·국제공항 관련 감면(인천)·투자진

흥지구에 대한 감면(광주)·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광주) 등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색과 산업정책을 고려한 특성화된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의 각 규정 중 서울시의 지역특색이나 경제 발전 또는 산업정책 등에 부합하는 감면규정은 "공연장"과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규 정 정도로 보이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감면조례와 비교하면 보편적인 감면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서울시의 특성화 또는 경제발전 등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서 「서울시세 감면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 중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감면에 있어서도 그 세부적인 규정은 「서울시세 감면조례」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타 광역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감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15년 전액감면"을 적용하고 나아가 동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경우 "최장 10년간 50% 이상 추가감면"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10년 전액감면+5년간 50% 추가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유치에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감면규정은 서울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정한 조세우대를 다른 지역에 대하여 역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점 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서울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당해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울시의 감면조례에 따른 시세감면 관련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25개 구청(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각의 감면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 기초자치단체 간의 감면조례 규정이 상이하여 조세공평을 훼손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강남구의 경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무기한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도 10년간 100% 및 추가 5년간 5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강북구와 송파구 및 서대문 구의 경우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75%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하여는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7년간 100%와 추

가 3년간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와 송파구 등 13개 구의 경우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을 각각 제9조(강남구)와 제8조(송파구) 등에 두고 있는바, 이는 동 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 세특례제한법 및 서울시 감면조례에서 위임한 권한을 일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지방세 감면 현황과 시사점

# 1. 중국

- 가. 중국의 조세제도 개관
  - 1)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와 법원성
    - (1)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는 과세권과 조세수입의 귀속권한에 따라 중앙세와 지방세 및 공향세로 구분된다. 중앙세란 당해 세목에서 원천한 조세수입이 중앙정부에 모두 귀속되는 세목을 가리키며, 현행 중국의 세목 중 소비세·차량구치세·선박톤세와 관세 등이이에 속한다. 공향세는 어떠한 세목에서 원천한 조세수입이 법률에 정한 비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배분하여 귀속되는 세목으로, 현행 증치세·기업소득세·자원세·영업세·인화세·성시유호건설세·개인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지방세란 조세수입이 100%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세목을 가리키며 현행 중국의 세목 중 성진토지사용세·경지점용세·방산세·계약세·토지증치세·차선세 및 연엽세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림-1〉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



### (2) 중국 세법의 법원성

세법의 법원이란 조세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며 중국의 경우 헌법·조세법률·조세행정법규·지방조세법규·조세부문규장 등이 세법의 법원에 속한다. 중국 헌법에서는 '모든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 중국의 헌법은 입법기관이 세법을 제정하고 공민에게 과세하는 것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에 관한 근본적인 법률근거로서 세법의 법원성을 가진다.

중국 헌법에서는 또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8) 이는 중국의 모든 법률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도록 위임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조세법률은 중국 세법의 중요한 법원이 되는바, 하위법규에 속하는 조세행정법규·조세규장 등은 모두 상기 조세법률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현행 중국 세법에서 조세법률형태로 입법된 세목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기업소득세법·개인소득세법 등이 있다. 중국의 조세행정법규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상무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권입법한 법규를 가리키는바, 이처럼 수권입법한 조세행정법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며 그 효력은 지방성법규 및 규장보다는 높지만 헌법과 조세법률보다는 낮다.9) 따라서, 조세행정법규의 규정은 헌법이나조세법률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현재 중국의 세법 중에 조세행정법규형태로 입법되어 있는 세목으로는 증치세잠행조례·소비세잠행조례·토지증치세잠행조례 등이 있다.

중국의 '지방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지방인민정부조직법(地方人民代表大會與地方人民政府組織法)'에 따르면,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정부가 소재하는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대도시의 인민대표대회에서 각종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10) 이에 근거하여 해남성과 각 민족자치구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로부터 수권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방조세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남성과 각 민족자치구 이외의 각급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조세법규를 제정할 수 없다.

<sup>7)</sup> 中國憲法 제56조

<sup>8)</sup> 中國憲法 제58조

<sup>9)</sup> 中國憲法 제89조

<sup>10)</sup> 中國地方人民代表大會與地方人民政府組織法 제7조

중국 헌법에서는 또한 '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 령에 근거하여 당해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지시·규장을 제정하여 반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1) 따라서, 국무원이 조세주관부문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조세법률 및 조세법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과 조세과세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관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세부문규장도 세법의 법원성을 가진다. 현재 중국의 세법 중에 이처럼 조세부문규장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으로는 국가세무총국에서 반포한 특별납세조정관리판법·재정부에서 반포한 세무대리시행판법 등이 있다.

한편, 중국의 '지방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지방인민정부조직법'에서는 각 성·자치구·직할시·자치구의 인민정부는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방규장을 제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2) 따라서, 조세지방규장도 세법의 법원성이 부여되어 있으나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조세지방규장은 반드시 조세법률과 조세법규의 명확한 수권범위에 근거해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지방조세규장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밖에 강학상 중국의 과세관청에서 조세행정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유권해석하여 공고한 문건 또한 중국 세법의 법원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조세규범성 문건'이라고 하며 '조세규범성 문건'에는 국무원에서 반포한 국발(國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공동으로 유권해석하여 반포한 재세(財稅), 그리고 국가세무총국에서 반포한 국세발(國稅發)·국세함(國稅函) 등이 포함되며,13) 일반적으로 각 행정부문에서 반포한 규범성문건은 상호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나, 실무적으로는 국무원 또는 중앙공산당에서 반포된 '국발(國發)'과 '중발(中發)'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sup>11)</sup> 中國憲法 §90

<sup>12)</sup> 中國地方人民代表大會與地方人民政府組織法 §7

<sup>13)</sup> 이러한 조세규범성 문건은 우리나라의 예규통첩 및 질의회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예규통첩이나 질의회신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국에서는 법원성이 인정되고 있음

〈그림-2〉 중국 세법의 법원성

법률구분	법률근거	유형			
헌법	헌법 제56조(납세의무)	-			
조세법률	헌법 제58조(조세입법권)	稅收徵收管理法,企業所得稅法, 個人所得稅法,關稅法			
조세행정법규	헌법 제89조(수권입법권)	增值稅暫行條例, 消費稅暫行條例 등			
지방조세법규	지방인민대회와 지방인민정부 조직법 제7조 (수권입법권)	海南省稅收保障條例등			
국무원 조세부문규장	헌법 제90조(수권입법권)	企業清算所得稅管理辦法 등			
지방정부 조세지방규장	지방인민대회와 지방인민정부 조직법 제7조 (수권입법권)	海南省 企業清算所得稅管理辦法 등			
조세규범성 문건	국무원 조세부문의 예규 및 질의회신 등	公告(稅務總局), 財稅(財政部), 稅總發(國稅發), 稅總函(國稅函)			

## 2) 중국의 현행 세목

## (1) 중앙세에 속하는 세목

현행 중국의 세법 중 중앙세에 속하는 세목으로는 소비세·차량구치세·선박톤세 등이 해당되며 통칙법으로서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소비세(中華人民共和國消費稅暫行條例)는 중국 국경 내에서 특정재화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단일거래세로서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와 유사한다. 현행 과세대상 재화로는 담배·술·각종 유류·폭죽·귀금속·골프용품·고급시계·요트·나무젓가락·원목바닥재·자동차·오토바이·전지 및 도료 등이 있다.

차량구치세(中華人民共和國車輛購置稅暫行條例)는 중국 국경 내에서 세법에 규정한 차량을 매입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행위세로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와 유사하다. 기본세율을 10%이며 배기량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선박톤세는 중국 국외에서 국내 항구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행위세이다. 적용세율은 선박톤수에 따라 최소 12.6위안/톤에서 최대 31.8톤을 적용한다.

세수징수관리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납부·징수절차·세무조사·납세담보·체납처분·조세감면·처벌절차·납세의무자의 권리와 의무·조세불복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통칙법이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법적 성격과 기본법적 성격이 모두 포함된다.

### (2) 공향세에 속하는 세목

현행 중국의 세법 중 공향세에 속하는 세목으로는 기업소득세·증치세·개인소득세·자원세·인화세·성시유호건설세 등이 해당되는바, 이중 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은 법률로서 제정되어 있으나 다른 세목은 국무원에서 수권하여 입법한 행정법규로 제정되어 있다.

기업소득세(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는 중국 국경 내에서 과세소득을 취득하는 기업 및 기타의 조직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소득세로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된다. 기업소득세의 기본세율 25%이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를 적용하며 경제특구에 대하여는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소득세의 세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60:40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철도부·은행·보험회사의 본점 총괄납부액은100% 중앙정부로 귀속된다.

증치세(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暫行條例)는 중국 국경 내에서 재화를 판매(수입)하거나 과세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또는 무형자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며 일반소비세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기본세율은 17%를 적용하나 생계에 밀접한 필수재화에 대하여는 13%의 저세율을 적용하며, 교통통신 및 건축업과 부동산업에 대하여는 11%를 적용하고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6%를 적용하고 소규모납세자에게는 3%의 징수율을 적용한다. 과거 증치세의 세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수입을 75:25로 배분했으나, 영업세와 증치세가 통합된 이후에는 5:5로 배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는 개인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소득의 유형을 모두 11개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하고 있다. 급여소득·사업소 득·용역소득·임차경영소득·양도소득·사용료소득·임대소득·우연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원고료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급여소득은 3%~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5%~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나 그 밖의 소득유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세 이외의 세수입은 60:40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배분하며 이자소득세 세수입은 전액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자원세(中華人民共和國資源稅暫行條例)는 중국 국경 내에서 광산개발 및 염전경영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목이다. 자원세의 과세대상으로는 원유·천연가 스·석탄·금속광물(8개 자원)·비금속광물(15개 자원)·바다소금 등 6개가 있다.

인화세(中華人民共和國印花稅暫行條例)는 경제거래 중의 계약의 체결 및 증빙의 취

득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행위세로서 우리나라의 인지세 및 증권거래세와 유사하다. 적용세율은 자금대차 0.05‰, 매매·건축설치와 공사도급 및 기술이전 0.3‰, 가공·건축공사탐사설계·화물운송·소유권이전·자금장부 0.5‰, 자산임대·창고보관· 재산보험 1‰·주식거래 1‰, 기타 각종 증서 5위안이다.

성시유호건설세(中華人民共和國城市維護建設稅暫行條例)는 중국 국경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증치세와 소비세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위 또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세목이다. 도시의 유지 및 건설비용조달을 위하여 납부할 증치세액 등에 부가(附加)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서 우리나라의 (구)도시계획세와 유사하다. 적용세율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재지에 따라 도시지역은 7%, 현(또는 진)지역은 5%. 기타의 지역 1%로 규정되어 있다.

## (3) 지방세에 속하는 세목

현행 중국의 세법 중 지방세에 속하는 세목으로는 계약세·경지점용세·성진토지사용 세·토지증치세·방산세·차선세·영업세 등이 해당된다.

계약세는 중국 국경 내에서 토지나 주택 등의 권리를 이전하는 때에 그 권리취득자에 게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재산세로서 우리나라 취득세와 유사하다. 적용세율은  $3\sim5\%$ 이다(단, 1주택의 경우  $90m^2$ 초과 1.5%,  $90m^2$ 이하 1%, 2주택부터  $90m^2$ 이하 1%,  $90m^2$ 초과 2%를 적용함).

경지점용세는 중국 국경내의 농업용지(경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타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그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우리나라의 토지분 재산세 중 농지분과 유사하다. 점용면적이 1인당 평균 면적 1무(畝) 이하인 지역은  $10\sim50$ 위안/ $m^2$ , 2무(畝) 이하 지역은  $8\sim40$ 위안/ $m^2$ , 3무(畝) 이하 지역은  $6\sim30$ 위안  $/m^2$ , 3무(畝) 초과 지역은  $5\sim25$ 위안/ $m^2$ 의 정액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4)

성진토지사용세는 중국 국경내의 국유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당해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보유라고 있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우리나라의 토지분 재산세와 유사하다. 대도시는  $1.5\sim30$ 위안/ $m^2$ , 중형도시는  $1.2\sim24$ 위안/ $m^2$ ,  $0.9\sim18$ 위안/ $m^2$ , 기타는  $0.6\sim12$ 위안/ $m^2$  의 정액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을 양도하고 소득을 취득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당해 토지사용권 등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목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및 (구)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하다. 적용세율은 가치증가분이 취득원가의 50%이하인 경우 30%, 100%이하인 경우 40%, 200%이하인 경우 50%, 200%초과인 경우 60%를 적용한다.

방산세는 중국 국경 내의 영업용 주택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대수입 에 대하여 그 소유권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재산세로서 우리나라의 건물분 재산세와 유사하다. 종가징수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1.2%/년, 임대수입징수의 경우 임대수입의 12%/년의 세율을 적용한다.

차선세는 중국 국경 내에서 차량 또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보유세로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및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와 유사하다. 적용세율은 승용차  $60\sim5,400$ 위안/대, 상용차  $480\sim1,440$ 위안/대, 화물차 및 기타 차량  $16\sim120$ 위안/톤, 오토바이  $36\sim180$ 위안/대, 일반선박  $3\sim6$ 위안/톤, 요트  $600\sim2,000$ 위안/m의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영업세는 중국 국경내에서 과세용역을 공급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부동산을 판매하고 취득하는 영업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용역의 공급과 유사하나 가공 및 수리수선용역의 경우에는 증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2016년 5월 1일부터는 증치세로 통합되어 현재 증치세로 과세되고 있는바, 과거 영업세로 과세하던 때에는 지방세에 속하였지만 증치세로 통합된 이후에는 공향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다루게 되므로 증치세로 통합되기 이전 지방세로서의 영업세에 관한 감면 규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한다. 각각의 과세대상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3%~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 3) 현행 중국의 조세감면제도 개관

#### (1) 조세감면의 유형

중국 세법상 조세감면은 크게 허가류감면과 등록류감면으로 구분되는바, 허가류감면이란 반드시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감면이 가능한 유형을 가리키며, 등록류감면이란 세무기관의 심사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하는 조세감면유형을 의미한다.15)

<sup>15)</sup> 이하에서는 중국의 조세감면에 관한 통칙법인 稅收减免管理辦法[2015]第43號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납세의무자가 허가류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법률과 법규에 따라 심사허가권한을 가진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등록류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기관에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기관이 당해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에 규정한 기한 이내에 조세감면을 신청하고 초과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바, 동 기간의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환급이자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실제 경영상황이 조세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등의행위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와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관련 규정 요건에 변화가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한 경우에는 세수징수관리법의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2) 허가류감면의 신청

납세의무자가 허가류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한 감면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는 성실신고의 의무를 부담한다. 신청한 감면항목이 법률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허가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수리하지 아니함을 고지해야 한다. 신청한 감면자료에 착오가 있는 경우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고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신청한 감면자료가 완전하지 아니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청한 감면자료가 완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감면자료를 완전히 보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수리해야한다.

세무기관에서 감면신청을 수리한 경우 또는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반드시 당해 세무기관의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일시를 기재한 증빙을 발급해하며, 조세감면심사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감면관련 법정 요건의 관련성에 대하여 진행하며 납세의무자는 성실신고의 책임을 부담한다. 감면신청이 법정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세무기

관은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조세감면을 허가하는 서면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률에 의거 조세감면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서면으로 허가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 해야 하나, 허가결정을 통보받은 후에는 감면받는 조세에 대하여 신고해야 한다. 납세의 무자의 조세감면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즉시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의 조세감면자격에 대한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 (3) 등록류감면의 신청

등록류감면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수징수관리의 편의를 제고하는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납세신고서의 부속서식 또는 부속자료를 제출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납부기한 이후 별도의 기한 내에 등록자료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등록자료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감면사항·근거·범위·기한 등을 기재한 자료, 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여 신청한 감면등록자료에 대하여 아래의 상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① 등록한 감면자료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등록한 감면자료가 완전하지 아니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 ③ 등록한 감면자료가 완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감면자료를 완전히 보정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등록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기관에서 감면신청을 수리한 경우 또는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반드시 당해 세무기관의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일시를 기재한 증빙을 발급해하며, 조세감면심사는 납 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감면관련 법정 요건의 관련성에 대하여 진행하며 납세의무자 는 성실신고의 책임을 부담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의 등록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해야 하는바, 납세의무자가 감면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등록류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해야 하며, 조세감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조세감면을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납세 신고해야 하나, 조세감면의 적용기간 중에 그 자격요건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세무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세무기관의 감독과 관리

세무기관은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이행상황을 리스크관리범위 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납세의무자가 조세감면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납세관련 상황을 은닉하거 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아닌지 여부
- ② 납세의무자가 허가류감면을 적용받는 요건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화상황에 대하여 신고하고 세무기관의 재심사를 거쳐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지여부
- ③ 납세의무자가 허위 또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조세감 면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 ④ 조세감면세액에 사용용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용도 에 따라 감면세액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⑤ 조세감면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어 조세감면의 적용을 중지하였는지 여부
- ⑥ 납세의무자가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⑦ 이미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기한에 맞추어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허가류 또는 등록류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기관의 사후관리 중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

징하고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기관은 납

세의무자가 최초로 감면등록하거나 감면등록을 변경한 후에는 반드시 사후관리업무를 개시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감면정책 적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심사해야 한다. 조세감면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변경등록할 것을 고지하고 조세감면을 적용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미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고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각급 세무기관은 감면허가와 등록허가에 대한 법률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급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감면에 대한 허가와 등록업무 상황에 대하여 추적조사하고 피드백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각급 세무기관은 조세감면자료를 선량하게 보관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며 상급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조세감면자료에 대한 평가와 심사 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급 세무기관은 경상적인 감독제도를 수립하여 조세감 면권한과 조건 및 시한 등에 따라 조세감면의 허가와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 부 등에 대하여 하급세무기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허가 또는 사실요건에 착오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 등이 세액을 과소납부하거나 미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기관이 권한을 초월하여 감면한 경우에는 세수징수관리법에 규정한 처벌이외에, 징수해야 하나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추징하고 상급세무기관에서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직원에게 책임을 공동으로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조세감면에 관한 법령에서는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의 실제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기술 또는 감정부문의 인증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조세우대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책임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인 등 관련 부문에서 불법적으로 증명을 제공하여 세액을 과소납부하거나 미납하게 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나. 중국의 지방세 감면제도 현황
  - 1) 과학기술 지원 관련 지방세감면
    - (1) 개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지방세의 감면은 영업세·방산세·성진토지사용세·계약세 등 지방세에 대한 감면과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등 공향세의 지방세수귀속분에 대한 감 면으로 구성된다. 즉, 기술양도 등을 통해 수입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시설 또는 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제3자가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공급하고 수입을 취득하는 경우의 영업세 면제,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에서 직접 과학기술개발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해주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방산세의 면제, 과학기술의 개발 및 연구에 직접 사용하거나 인큐베이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성진 토지사용세 및 관련 계약에 대한 계약세 등으로 구성된다.

#### (2) 영업세

단위 또는 개인이 기술을 양도하거나 기술개발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및 그와 관련 있는 기술자문 및 기술서비스를 공급하고 취득하는 수입(이하, "4종 기술수입"이라 함)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4종 기술수입을 공급하는 단위나 개인이 영리목적이든 비영리목적이든 그 목적에 불구하고 모든 4종 기술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이러한 4종 기술수입에 대한 영업세 감면규정은 일반적인 영리조직 또는 비영리조직이외에도 각급 대학 등고급학력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나 외국 국적인이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무형자산양 도수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해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주 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의 공급과 지질탐사업종에 대한 조세우대규정으 로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각급 과학기술원에서 벤처기업 등에 실험실이나 연구실을 제공하거나 인큐 베이팅 관련 시설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과학기술원 이외의 관련 법률에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벤처기업 등에 인큐베이팅 관련 시설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도 영업세 의 징수를 면제한다.

소주공업원구에 소재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당해 기업이 공급하는 일체의 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영업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기술선진형 기술서비스기업이 해외에 기술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취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3) 방산세

비영리성 과학기술연구기관에서 자가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전문적으로 과학기술연구에 종사하는 기관에서 과학기술개발용도로 자가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과학기술원에서 자가사용하거나 벤처기업 등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과학기술원 이외의 과학기술개발 연구기업이 인큐베이팅 장소로 자가사용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인큐베이팅을 위해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4) 성진토지사용세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자가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전문적으로 과학기술연구에 종사하는 기관에서 과학기술개발용도로 자가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기업의 인큐베이팅 등에 사용되는 토지와 국가 또는 대학 및 과학 기술원에서 기술개발에 직접 사용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제공하여 인큐베이팅에 사용하 는 경우 역시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5) 계약세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군사단위 및 기타 교육기관이 토지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동산 등의 취득 관련 계약에 대한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상술한 토지 또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유상 및 무상을 포함하며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하는 경우를 만족하면 모두 관련 계약에 대한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기본생활보장

#### (1) 개요

중국 인민의 기본생활보장 관련 지방세의 감면은 영업세·방산세·성진토지사용세·토지 증치세·경지점용세·계약세 등에 대한 감면으로 구성된다.

영업세의 경우 주로 탁아소와 양로원 등의 기본생활보장시설 및 자가보유주택 관련

감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산세 또한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1주택 또는 공용주택에 대한 감면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진토지사용세 및 경지점용세의 경우 주로 사회복지와 주택재개발사업 등 저소득계 층 지원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토지증치세와 계약세는 주고 서민계층이 보유하는 1주택의 양도관련 초과양도수익 및 1주택의 양도계약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2) 영업세

탁아소, 유아원, 양로원,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에는 혼인과 장례서비스 등이 포함되는바, 혼인중개기구 및 장례서비스 기구에서 공급하는 혼인중개 및 장례서비스 등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개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1주택의 양도 및 임차에 있어서 개인이 취득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자 또는 1주택을 임대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 ① 개인이 자가건설하여 자가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수입을 수취하는 경우
- ② 기업단위 또는 행정단위가 당해 기업단위 또는 행정단위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고 수입을 수취하는 경우
- ③ 주택공적적립금에서 개인에게 주택매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수입을 수취하는 경우
- ④ 정부에서 규정한 가액기준에 따라 염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수입을 수취 하는 경우
- ⑤ 공유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공유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수입을 수취하는 경우

이밖에도 장례서비스 및 묘지사용권 등 장례와 관련된 영업행위와 사회보장기금 등의 투자행위에 대한 영업세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묘지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장례서비스로서 묘지사용권 등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사회보장기금이사회 또는 사회보장기금투자관리인 등이 당해 기금 등을 활용하

여 증권 등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3) 방산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 등에 대하여는 거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하는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주택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
- ② 개인이 공유주택을 매입하거나 집자주택에서 개인이 출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
- ③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방산세를 50% 감면
- ④ 기업단위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시장가격으로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4%의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방산세를 징수
- ⑤ 공유주택을 임대하고 취득하는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 이밖에도 사회복지 또는 기타의 필수재 공급 등에 소요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방산 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① 비영리 사회복지기구로서 노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
  - ② 난방공급기업이 주민들에게 난방을 공급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동 산 등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

#### (4) 성진토지사용세

성진토지사용세의 경우 주로 사회복지와 기본생활 보장 등의 목적에 근거하여 징수를 면제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① 비영리 사회복지기구로서 노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성진토지사용세 면제
- ② 난방공급기업이 주민들에게 난방을 공급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동 산 등에 대한 성진토지사용세 면제
- ③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불구하고 모두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
- ④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이미 공공임대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성진토지사용세를 면제

⑤ 도시 또는 공업구 및 광업구 등의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민에게 신규주택을 건설 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

## (5) 토지증치세

토지증치세는 주로 기본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개인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① 보통표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그 토지증치액이 공제항목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합작을 통해 주택 등을 건설하고 그 합작비율에 근거하여 완공 후에 각각 자가 사용하는 경우
- ③ 개인이 거주용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개인간에 각자 거주용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이밖에 기업단위 또는 행정단위 등에서 주택정책 등에 공공의 목적에 근거하여 공급 하는 주택 등에 관한 토지증치세도 징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국가의 정책목적으로 인해 사유하고 있던 주택 등이 징용되거나 공용주택 등의 사용권 등이 회수된 경우
- ② 법률에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단위와 사업단위 또는 사회단체 등 조직에 서 보유하던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도시 또는 광업구 등의 재개발로 인한 새로 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③ 기업단위 또는 사업단위 및 사회단체 등의 조직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공공임 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6) 경지점용세와 계약세

경지점용세와 계약세는 사회복지와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시설 및 주거용 주택의 양도 등의 경우에 대하여 징수를 면제하고 있다. 양로원 및 그 관련 시설에서 점용하고 있는 경지에 대하여는 노인복지의 지원을 위해 경지점용세의 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유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세의 징수를 면

제하며, 개인이 1주택에 해당하는 보통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세를 50% 경감하여 징수한다. 공유주택을 매입한 후 토지출양금과 기타 출양관련 비용을 납부하여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한 경우, 토지 관련 권리이전에 따른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도시 또는 공업구 및 광업구의 낙후지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요건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매입 또는 개조에 따른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하거나 50% 감면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단위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매입 관련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부부 중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 또는 부동산 및 토지의 소유권이 부부의 공동소유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3) 저소득계층 지원

### (1) 개요

저소득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은 크게 저소득계층과 장애인계층에 대한 감면으로 구분되며, 주로 영업세·방산세·성진토지사용세·토지증치세·계약세 등에 대한 감면으로 구성된다.

영업세의 경우 주로 장애인과 저소득계층인 농민에게 공급하는 과세용역에 대한 감면으로 구성되며, 방산세는 공유주택이나 염가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진토지사용세와 토지증치세 또한 공유주택이나 염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구성되며, 계약세는 경제적용방(우리나라의 국민주택)이나 공유주택 또는 염가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영업세

장애인이 공급하는 과세용역 및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단위에서 공급하는 과세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단위에서 공급하는 과세용역에 대하여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기관에서 당해 단위에서 실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에 근거하여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염가주택임대업에 종사하는 단위에서 법률에 규정한 사회보장대상자에게 염가로 주택을 임대하고 수취하는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이밖에 농촌금융기관에서 영세농민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50% 감면하며, 농촌금융기관에서 보험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하는 수입에 대하여도 3%의 세율로 영업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 (3) 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정부의 규정가격에 따라 공유주택 또는 염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염가임대주택의 경영단위에서 법률에 규정한 사회보장대상자에게 염가로 주택을 임대하고 수취하는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염가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4) 토지증치세와 계약세

기존주택을 염가주택 또는 경제적용방으로 전환한 경우로 그 증치액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증치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철거로 인하여 이전하는 주민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매입가격 중 기존 철거주택의가격 및 이전비용(즉, 철거보상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염가임대주택이나 경제적용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개인이 경제적용방을 매입한 경우에는 법정세율을 50% 감면하여 계약세를 징수한다. 또한, 거주자인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이 징용되어 화폐보상을 받거나 기타의 주택을 교환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4) 의료위생 관련

#### (1) 개요

의료 및 위생 사업 관련 지방세의 감면은 크게 의료단위의 의료행위와 관련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구성된다. 주로 방산세·성진토지사용세·경지점용세 및 계약세에 대한 감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각급 의원 등 의료단위에서 의료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이에는 위생부의 허가를 받아 임상용 혈액을 채집하거나 공급하는 혈액센터로서 당해 센터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또한 위생기구와 비영리 의료기구에서 자가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기업에서 설립한 의료시설로서 당해 의료활동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방산세와 마찬가지로 혈액센터에서 당해 센터의 고유업무에 자가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도 면제하며, 위생기구와 비영리 의료기구에서 의료목적으로 자가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성진토지사용세 역시 징수를 면제한다.

## 다) 경지점용세와 계약세

각급 의료기구에서 점용하는 경제에 대하여는 경지점용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다만, 국가기관·사업단위·사회단체·군사단위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토지와 부동산을 승계받아 의료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5)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관련 지방세감면

#### (1) 개요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지방세의 감면에는 크게 직접적인 환경보호사업에 관한 감면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체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절감으로 구분된다. 주로 환경 보호사업 관련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한 감면과 토지개간 등의 경우와 대체에너지의 사용 등에 대한 감면으로 구성된다. 감면대상 지방세 세목으로는 영업세·방산세·성진토지 사용세·차선세 등이 해당된다.

#### (2) 영업세와 방산세

에너지절약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절약 용역을 공급한 후 취득하는 과세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천연산림보호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3) 성진토지사용세와 차선세

산지를 개간하거나 바다를 간척하여 조성한 토지 및 황무지를 개간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가 사용에 투입된 날로부터 5년~10년 간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천연산림보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에너지사용을 절감하거나 대체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차량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차선세의 징수를 50%감면하거나 완전 면제한다. 더불어 신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차선세의 징수를 완전 면제한다.

# 6) 문화사업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 (1) 개요

문화사업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으로는 크게 박물관 등 문화단위에 대한 감면과 영화산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 및 광고산업 및 방송사업 관련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영업세·방산세·성진토지사용세·토지증치세 등이 감면대상 세목에 속하며, 주로 문화사업 관련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영업세를 감면하고 있다.

#### (2) 영업세

박물관 또는 세계박람원 등에서 공급하는 영업세 과세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각급 박물관 등에서 공급하는 과세용역에 대하여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상해 세계박람원 및 세계박람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과세용역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상해박람국 및 그 운영기업이 과세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영화공급기업과 유선TV 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과세용역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영화공급기업이 영화상영기업 등의 단위로부터 수취하는 영화발행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영화의 제작 및 발행과 방영 등에 종사하는 영화기업이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방송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유선TV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시청료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유선TV 사업자가 농촌주민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개인이 양도하는 저작권이나 국가대극원의 설계단위 및 우정국에서 공급하는 과세용

역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개인이 저작권을 양도하고 수취하는 수입금 액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국가대극원의 설계단위와 하도급단위에서 수취하는 과세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우정국 및 그 소속우정단위에서 일반우편서비스와 특급우편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수취하는 과세용역수입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이밖에도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 제작기업이 공급하는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3%의 저세율로 영업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 (3) 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등

결손이 발생한 기업과 CCTV 및 세계박람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결손이 발생한 문화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용역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세계박람원에 소재하는 사업목적 부동산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CCTV에서 사업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결손이 발생한 기업과 CCTV 및 세계박람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결손이 발생한 문화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용역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세계박람원에 소재하는 사업목적 부동산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CCTV에서 사업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이밖에 상해세계박람국과 상해세계박람그룹에 세계박람회 종료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토지증치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7) 교육 및 취업 관련 지방세의 감면

#### (1) 개요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과세용역의 공급 및 관련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 등에서 공급하는 과세용역의 공급 및 관련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이 포함되며, 취업 관련 지방세의 감면으로는 군전역자·장애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포함된다. 교육 및 취업 관련 감면대상 세목으로는 영업세·방산세·성진토지사용세·경지점용세·계약세 등이 포함된다.

## (2) 교육 관련 지방세의 감면

교육 관련 지방세의 감면으로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급하는 과세용역에 대한 영업세 감면, 교육관련 부동산에 대한 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및 경지점용세의 감면, 교육관 런 부동산 등의 취득 관련 계약세의 감면 등 포함된다.

우선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에서 공급하는 교육용역 및 학생이 공급하는 과세용역과 교육기구에서 공급하는 관련 교육용역 및 학교 등의 후근단위에서 취득하는 임대료수입 및 서비스수입과 식당 등에서 공급하는 과세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학교 등의 단위에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기숙사 및 후근그룹에서 자가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하고, 각급 학교와 탁아소 및 유아원에서 교육목적으로 자가사용하는 토지 및 후근그룹에서 자가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이밖에 학교와 유아원 등에서 점용하는 경지에 대하여는 경지점용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기술공업 관련 학교에서 점용하는 경지에 대하여도 경지점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사업단위·사회단체·군사단위와 기타 교육기구로부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승계받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등의 승계 관련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국가의 교육재정이외의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교육기구로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승계받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취업 관련 지방세의 감면으로는 퇴직군인의 재취업과 창업 관련 감면과 실업자의 재취업 관련 감면 및 장애인의 취업 관련 감면 등으로 구분되며, 주로 영업세에 대한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퇴직군인 및 그 가족이 기업 또는 개인사업장을 신설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는바, 영업세의 면제대상에는 퇴직 군간부 및 퇴직사병과 그 가족이 모두 포함되며, 전역사병 등이 개인서비스업을 창업하거나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실업자가 상업기업·서비스기업·노무용역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업기업 등이 납부할 영업세를 고용한 실업자 수에 근거하여 감면하며, 재취업우대증을 보유한 실업자가 개인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실제 고용한 실업자 수에 근거하여 영업세를 감면한다.

장애인을 고용한 단위에 대하여는 당해 단위에서 실제 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영업세의 징수를 감면한다.

이밖에 가족기업에서 그 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및 영세기업 등이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도 영업세를 감면한다. 우선, 가족기업에서 그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및 영세기업에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실제 고용한 종업원 수에 근거하여 영업세의 징수감면하며, 해외에서 귀국한 인재를 고용한 경우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8) 외자유치를 위한 지방세감면

#### (1) 개요

외자유치를 위한 지방세감면으로는 국제기구 등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 및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및 화교 등의 해외 전문가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등으로 구분된다.

감면 대상 지방세목으로는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업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방산세 및 성진토지사용세 및 차량과 선박 등의 보유에 대한 차선세 등이 해당된다.

# (2) 영업세와 방산세

국외의 선급사가 중국 국내에서 공급하는 선박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세계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대출자금으로 건축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중국 국경 내의 거주자 또는 기업이 중국 국경 외에 건축업 또는 문화체육업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국외에 종업원 등을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이밖에 화교 등의 외국 전문가가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로 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주택에 대한 방산세(5년간)와 성진토지사용세를 면제하며, 외 국인 전문가를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전문가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外國專家大厦)에 대하여도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서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선세와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9) 교통 및 에너지 등 기초건설사업 관련 지방세의 감면

#### (1) 개요

교통 및 에너지를 위한 지방세감면으로는 주로 철도기업과 고속도로기업 및 석탄 및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개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철도기업과 고속도로기업이 공급하는 교통용역에 대한 영업세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경지점용세, 차선세 및 계약세 등이 감면 대상지방세 세목에 속한다.

## (2) 영업세

중국민항에서 규정에 따라 수취하는 공항관리건설비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수도고속도로발전유한공사 등이 대출상환기간에 수취하는 차량통행료 등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고속도로기업이 수취하는 차량통행료에 대하여는 3%의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영업세를 징수하며, 청장철도공사 등이 수취하는 수입에 대하여도 영업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중국철도통신그룹에서 철도운수기업에 통신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취하는 수입금액 및 철도건설기금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영업세 징수면제한다.

## (3) 방산세

철도부 소속 철도운수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자가사용하는 부동산 및 석탄기업의 오수 처리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청장철도공사 및 그 소속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자가사용하는 부동산 등도 방산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며, 철도운수기업 및 합자철도운수기업이 자가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방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4) 성진토지사용세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및 전력공급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중국핵공업총공사와 중국민항 등에서 사업목적으로 자가사용하는 토지 및 석탄기업 등의 탄광 등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도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이밖에 청장철도공사 및 그 소속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자가사용하는 부동산과 철도운 수기업 및 합자철도운수기업이 자가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 를 면제한다.

해양석유기업에서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따라 자가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성진 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항구에서 하역용 부두 등에 사용되는 토지 및 고속버스 터미널 등의 주차장과 대합실 등에 대하여도 성진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5) 경지점용세와 차선세 및 계약세

철도·도로·공항활주로·항공기 계류장·항구 등 공공교통의 목적으로 점용되거나 해양 석유기업이 원유저장시설 등으로 점용되는 경지에 대하여는 경지점용세의 징수를 면제 한다.

공공교통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선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철도부 소속의 철 도회사에서 토지 또는 부동산의 사용권을 승계 받아 철도운수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 우에는 당해 사용권 등의 승계 관련 계약 및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계약에 대하여도 계약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다. 중국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사점

### 1)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전술한 것처럼 중국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과학기술(연구개발)·기본 생활보장·저소득 계층 지원·의료위생·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문화사업·교육 및 취업보장·외자유치·기초 건설사업 등 총 9가지 분야에 대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지방세 감면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하나의 세목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적의 충분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목을 모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컨대,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기업소득세의 지방정부 귀속분(납부세액의 40%)·개인소득세·영업세·방산세·성진토지사용세·계약세 등 과학기술(연구개발)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지방세 조세부담을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그 결과 북경시 중관촌과학기술구의 경우 1999년 설치이후 10여 년 만에 미국의 실리콘벨리에 비견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으며, 각 지방에 소재하는 경제특구

등 또한 신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2) 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중국의 소득과세제도는 법인에 대한 과세인 기업소득세와 개인에 대한 과세인 개인소 득세로 구분되는 바,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당해 지역의 중점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방세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세지출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공향세인 기업소득세 세수입의 지방정부 할당액(기업소득세 납부세액의 40%)도 감면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정부에서 과 세권과 징수권을 모두 행사하는 개인소득세는 물론 그 성격상 사실상 소득과세인 영업 세와 토지증치세도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지방정부는 조세감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적 감면수단인 재산과세와 거래과세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직접적 감면수단인 소득과세에 대한 감면까지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지방세 감면제도의 추진

중국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사회발전규획에 근거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의 정책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발휘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중국 중앙정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현재까지 매 5년을 주기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5개년 규획(이하, 5개년 규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지방정부 또한 5개년 규획에 근거하여 당해 지방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오고 있다.

이에는 재정정책(조세정책 포함)·금융정책·산업정책 등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세정책은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중관촌과학기술구 등의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가장 최근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IT산업·벤처투자·전기자동차·반도체산업·무인기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15년 전인 "제10차 5개년 규획"으로부터 입안되어 현재까지 장기간 집행되어 온 감면정책이다.

즉, 중국에서는 어떠한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조세감면정책이 결정되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정책효과가 제고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4) 조세감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제도 시행

중국에서는 과도한 조세감면의 남발로 인한 재정악화와 조세감면을 이용한 부당한 조 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관리판법"이라는 조세가면에 대한 사후관리규 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세감면관리판법"에서는 조세감면의 유형을 등록류와 허가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감면에 관한 권리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조세감면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를 제고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사전심사의 경우 반드시 관련 조세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의 경우 조세감면의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상태와 기술수준 등을 확인하여 조세감면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동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조세감면관리판법에서는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법률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만일 관련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태 또는 부작위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일본

# 가. 일본의 지방세제도 개관

## 1) 현행 일본의 조세제도와 법원성

# (1) 현행 일본의 조세제도 개요

현행 일본의 조세제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다시 도부 현세와 시정촌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15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그 중 휘발유세 등 6개의 세목은 국세로 징수되나 징수한 세액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양여하도록 하는 특정재원에 속한다. 지방세 중 도부현세는 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도부현민세 등 총 13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도부현민세 등 11개 세목은 보통세로 징수되며 수렵세 등 2개의 세목은 목적세로 징수되고 있다,

〈그림-3〉 현행 일본의 조세제도 개관

국세	지방세	
	보통세	
소득세	도부현세	시정촌세
법인세	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
지가세	사업세	고정자산세
지방법인특별세	지방소비세	경자동차세
소비세	부동산취득세	시정촌담배세
주세	도부현담배세	광산세
담배세	골프장이용세	특별보유토지세
휘발유세	자동차취득세	법정외 보통세
항공기연료세	광구세	
석유석탄세	고정자산세	목적세
전원개발촉진세	경유인수세	입탕세
자동차중량세	법정외 보통세	사업소세
관세 및 톤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인지수입	수렵세	법정외 보통세
특정재원	법정외 목적세	국유재산소재시정촌교부금

지방세 중 시정촌세는 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시정촌민세를 중심으로 1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시정촌민세 등 7개 세목은 보통세로 징수되며 입탕세 등 4개 세목으로 징수되고 있고 나머지 1개는 '국유재산소재 시정촌교부금'이라는 명칭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 (2) 현행 일본 세법의 법원성

일본 헌법 제30조에서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일본의 헌법에서도 세법의 법원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일본 헌법 제84조에서는 '새로운 조세를 과하거나 또는 현행 조세의 변경은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의할 것을 필요로'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더욱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세법의 법원성이 인정되고 있는바, 현행 일본의 법률체계에 따르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이 내국세법의 법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조세조약과 교환공문 등을 통하여 국제법원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일본 세법의 해석기준인 '통달'은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급행정청이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의 운용방침 등에 대하여 하급행정청에 행하는 명령 또는 지령으로서 법원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명령으로서의 기속력은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일본 헌법 제92조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94조에서는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세조례의 법원성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의 지방세법에서는 제1장에서 통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장 이하에서는 각 지방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와 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망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성에 근거하여 지방세법과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일본의 현행 세목 개요

(1) 국세에 속하는 세목

#### ① 개요

일본의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지가세·지방법인특별세·소비세·주세·담배세· 휘발유세·항공기연료세·전원개발촉진세·자동차중량세·관세 및 톤세·인지세(인지수입) 등 13개세목과 중국의 공향세처럼 국세부문에서 징수관리하나 징수세액의 일부를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특정재원으로 구성된다.

즉,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 국세부문에서 부과징수하고 세액을 전액 국고에 납입하지만, 특정재원에 속하는 국세수입의 경우 특정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에는 휘발유세·석유가스세·항공기연료세·자동차중량세·특별톤세·담배특별세 등이 포함되는바, 지방휘발유세(국세총액의 0.7%)와 자동차중량세(국세총액의 0.7%) 및 담배특별세(국세총액의 0.3%)를 제외한 특정재원은 사실상지방정부로의 세액의 분배(양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 ② 소득세

일본의 소득세는 거주자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소득의 유형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일시소득·잡소득의 10가지로 구분하고, 총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총합소득에는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소득·일시소득·잡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총합소득에 대하여 5%~4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바, 총합소득은 종합과세의 개념이므로 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나, 장기보유양도자산과 일시소득의 경우에는 각 소득의 1/2만 합산하여 과세한다.

한편, 정책목적에 의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등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의 특성으로 인해 퇴직소득과 산림소득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때 산출된 소득세액의 일부는 주민세 또는 사업세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할당되는바, 이를 주민세의 경우 개인주민세 소득할 또는 균등할이라고 하며 사업소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세라고 한다.

## ③ 법인세

일본의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단체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은 국내외의 모든 원천소득에 대한 무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세율은 출자자본을 기준으로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단체에 대하여는 30%를 적용하나, 1억엔 이하의 중소법인과 자본 또는 출자가 없는사단 등의 단체와 특정의료법인에 대하여는 22%를 적용한다.

한편, 일본의 법인세법에서는 법률에 규정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익을 통산하여 연결납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100%의 지분관계에 있는 모자회사 등 기업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산출된 법인세액의 일부는 주민세 또는 사업세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할당되는데,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주민세 균등할 또는 법인세할이라고 하며 사업세의 경우법인사업세라고 한다.

## (4) 지가세

일본의 지가세는 법인 및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토지와 임차권 등 권리 포함) 증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매년 1월 1일)에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에는 임차권·지상권·건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지역권,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하천구역 내의 토지의 점용허가에 의한 권리, 도로 또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 영구소작권 및 농지나 목장용 초지에 존재하는 임차권 등이 포함된다.

지가세는 과세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출자금액 1억엔 이상인 법인의 경우 10억엔, 중소법인 및 개인의 경우 15억엔)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2/1,00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유증인(사인증여포함)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일본의 상속세는 민법상 각 상속인이 민법의 규정한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가정하여 총 상속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세액을 각 상속인에게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10\%\sim50\%$ 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는 사인증여를 제외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수증인이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일본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서 취득한 모 든 재산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재산 에 대하여만 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일본에서는 1역년 간 증여로 취득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며, 기초 공제가액(110만엔) 및 배우자공제(혼인기간 20년 이상 2,000만엔)을 차감한 가액에  $10\%\sim50\%$ 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 ⑥ 소비세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며,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공제방식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소비세를 과세하는바, 국 내에서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8%의 세율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 지로 과세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바,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의 편리를 위하여 매출세액에 의제매입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산출된 소비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소비세의 과세대상자산과 활물에 따라 각각 소비세 양도할과 소비세 화물할로 구분된다.

### ⑦ 주세와 담배세

주세와 담배세는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에 속하는 세목으로서 과거 소비세의 시행 이전에는 여러 가지 개별재화에 대하여 물품세 형태로 과세하였으나, 소비세 시행 이후 대부분 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흡수되고 현재는 개별소비세 성격으로 과세되고 있다.

주세는 주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과세대상 주류의 제조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종량정액과세방식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담배세는 담배세법에 의해 제조담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담배를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주세와 마찬가지로 종량정액과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세로서의 담배세도 설치되어 있는바, 담배의 제조자 및 특정판매업자 및 도매판매업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제조담배를 소매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 종량정액과세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 ⑧ 휘발유세와 항공기 연료세 및 석유석탄세와 석유가스세

일본의 휘발유세와 항공기연료세 및 석유석탄세와 석유가스세는 일반적으로 석유관계세로 통칭되며, 과거 개별재화에 대한 물품세 형태로 과세되고 있었으나 소비세의 시행에 따라 개별소비세 성격으로 과세되고 있다.

휘발유세는 휘발유세법에 의해 휘발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휘발유의 제조자 및 보세구역에서 휘발유를 인취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휘발유의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휘발유를 인취하는 때에 종량정액과세방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적용세액은 1kl당 48,600엔을 적용하며 이와 동시에 지방휘발유세로서 1kl당 5,200엔이 적용되어 총 53,800엔을 납부해야 하는바, 휘발유세는 국도정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지방휘발유세는 지방정부로 양여되어 지방도로 정비재원으로 충당된다.

항공기연료세는 항공기연료세법에 의해 항공기연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항공기에 주입한 항공기연료의 수량을 기초로 종량정액과세하고 있다. 항공기연료세의 적용세율은 1k당 26,000엔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잇는바, 항공기연료세 세수의 11/13은 중앙정부의 항공기정비재원으로 사용되면 2/13는 공항관계 시정촌 및 도도부현의 공항대책비로 양여된다.

석유석탄세는 석유석탄세법에 의해 원유와 석유제품 및 석탄 등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원유와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및 석탄의 채취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하는 세목이다. 원유 및 수입석유제품에 대하여는 1세당 2,040엔, 천연가스 및 석유가스는 1t당 1,080엔, 석탄은 1t당 700엔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석탄세의 세수입은 연료안정공급대책 및 에너지수급 구조 고도화대책에 충당된다.

석유가스세는 석유가스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석유가스를 과세대상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석유가스를 충전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보세지역으로부터 석유가스를 인취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 이때의 적용세액은 1 kg당 17엔 50전으로서 종량정액과세의 형태로 징수되며, 중앙과 지방의 각급 도로정비에 필요한 재원으로사용된다.

## ⑨ 인지세와 자동차중량세 및 전원개발촉진세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각종 계약서 및 기타의 문서의 작성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당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에 근거하여 정액과세한다. 인지세의 과세대상문서로는 각종 계약서·유가증권·정관·예금과 적금증서·보험증권·신용장·배당금영수증 또는 배당금입금통지서·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영수증과 각종 통장 및 각종 금품수수시 수취하는 장부 등이 있다.

자동차중량세는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하여 자동차검사증으로 교부받는 자동차와 동법에 의해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는 경자동차에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는 자(자동차검사를 받은 차량) 및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는 자(신고한 경자동차)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자동차중량세는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이나 자동차의 중량을 기준으로 당해 차량의 환경보호기능에 따라 달리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 매 0.5t마다 2,500엔이 과세되나, 18년이 경과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매 0.5t마다 6,300엔을 과세한다.

마지막으로 전원개발촉진세는 일반전기사업자의 판매전기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일반 전기의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1,000㎞당 375엔의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판매전기에는 일반전기사업자가 사무소 또는 사업소나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전기 및 일반전기사업자가 자가소비한 전기를 의미하며,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수입은 전원입지대책이나 전원다양화대책 등에 충당된다.

# ① 지방법인특별세

지방법인특별세는 법인사업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소득금액이 800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9%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별세이다. 즉, 상술한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은 지방세인 법인사업세를 2.9%의 세율로 납부하는 동시에 추가로 당해 적용세율에 148%의 부가세율을 적용하여 지방법인특별세를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인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은 2.9%에 1.392%를 추가로 부담하여 총 4.292%의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바, 이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보조하기위한 수단으로 추가징수되는 특별세로 이해된다. 이는 주로 각 지역간에 조세수입이 불균형함으로 이해 발생하는 불공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법인특별세의 세수입은 지방양여세로 하여 각 도부현에 양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지방세에 속하는 세목

## ① 개요

일본의 지방세는 과세권의 귀속여부에 따라 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구분되며 도부현 세로는 도부현민세 등 13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촌세는 시정촌민세를 중 심으로 11개의 세목과 국유재산소재 시정촌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부현세는 다시 11개의 보통세와 2개의 목적세로 구분되는바, 보통세는 도부현민 세·사업세·지방소비세·부동산취득세·도부현담배세·골프장이용세·자동차취득세·광구세·고정자산세(특례)·경유인수세·법정외 보통세로 구성되며, 목적세로는 수렵세와 법정외목적세로 이루어져 있다.

시정촌세는 다시 보통세인 시정촌민세를 중심으로 고정자산세·경자동차세·시정촌담 배세·광산세·특별토지보유세 및 기타의 법정외 보통세와 목적세인 입탕세·사업소세·도 시계획세·국유재산소재 시정촌교부금 및 기타의 법정외 목적세로 이루어져 있다.

전술한 것처럼 일본의 지방세는 우리나라보다 세목이 많고 과세대상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이중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 및 도부현담배세와 시정촌담배세는 우리나라의 주민세 및 담배세와 매우 유사하며, 고정자산세는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유사하나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는 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서 각각 소득할과 균등할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도부현담배세와 시정촌담배세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 중 담배소비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반출량 등에 근거하여 종량정액과세하는 세목이다. 또한 고정자산세는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이외에도 각종 상각 자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재산세보다 과세범위가 훨씬 넓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도부현세에 속하는 사업세와 지방소비세는 각각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와 지방 소비세와 유사한 세목으로서, 사업세의 경우 개인사업세와 법인사업세로 구분되며 지방 소비세는 국세인 소비세를 과세표준으로 징수한다.

개인사업세는 특정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징수되며 법인사업세는 모든 법인사업자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소비세에 부가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소비세의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액의 계산이 단순하다.

# ②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는 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서 납부할 세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각각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각 납세주체에 따라 개인분(개인할)과 법인분(법인할)로 세분화 되어 있다.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개인납세의무자는 도도부현(또는 시정촌)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 또는 가옥부지가 있으나 당해 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으로 한다. 도도부현(또는 시정촌)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균등할 및 소득할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 또는 가옥부지가 있으나 당해 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는 균등할만 과세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균등할과 소득할은 모두 일정한 표준세율을 규정한 후 일정범위 내에서 적용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즉 개인에 대한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 균등할은 각각 1,000엔과 3,000엔을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30% 정도를 추가하여 과세하기도 한다. 개인에 대한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 소득할은 직전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주민세에 규정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 각각 4% (도부현민세)와 6%(시정촌민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나, 일부 지역(도부현의 경우)에서는 0.025%를 가산하여 징수하기도 한다.

개인에 대한 도부현민세 소득할은 각 소득의 유형에 따라 주식양도 소득할과 이자할 및 배당할로 구분되며 시정촌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인에 대한 도부현민세 주식양도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으로 하며, 당해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도부현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인에 대한 도부현민세 주식양도 소득할의 과세표준은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며 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며, 당해 납부할 세액 중 1%의 사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3/5을 시정촌에 교부한다.

그러나 도부현민세 이자할은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모두 과세하며 국세인 소득세법 과 조세특별조치법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각종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도부현민세 이자할은 지급받은 이자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5%의 세율로 과세하며, 당해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

하고 있다. 다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지급받는 이자, 공공법인 등이 지급받은 이자로 그 소유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및 금융기관 및 증권업자가 지급받는 이자로서 국세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도부현민세의 이자할 또한 비과세한다.

개인에 대한 도부현민세 배당할에 대하여는 국세인 소득세와 조세특별조치법에서 특정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도부현민세 배당할의 납세의무자는 특정배당이 지급되는 개인으로서 당해 특정배당이 지급되는 날 현재 도부현 내에 주소를 둔자로 하며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도부현민세 배당할은 도부현민세 주식양도 소득할과 마찬가지로 징수한 세액의 1%를 사무비로 공제한 금액의 3/5를 시정촌에 교부한다.

법인에 대한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도부현(또는 시정촌)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법인격없는 사단법인 포함)과 도부현(시정촌) 내에 기숙사는 있으나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는 법인및 도부현(시정촌)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가 소재하며 법인과세신탁의 인수업무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개인으로 한다. 도부현(시정촌) 내에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의 경우 도부현세와 시정촌세의 균등할과 법인세할이 모두 과세되나, 도부현(시정촌) 내에 기숙사만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균등할만 과세되며 법인과세신탁의 인수업무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할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비과세독립행정법인 및 도부현·시정촌·특별구·지방공공단체조합·재단구 등의 공적법인과 일본적십자사·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과 학교법인 등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법인에 대한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균등할은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있다.

법인에 대한 도부현민세의 표준세율은 당해 법인 등의 자본규모에 따라 2만엔~80만엔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시정촌민세의 경우당해 법인 등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엔~300만엔까지 9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규정된 표준세율에서 최고 1.2배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도부현민세와 시정촌세의 법인세할은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산출된 법인세액 또는 귀속법인세액(연결납세의 경우)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정 공제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하기 이전의 금액으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연구비와 교육훈련비에 대한 법인세액특별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 한다.16)

한편, 국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부현민세와 시정촌세의 법인세할에 대하여는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 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결손금은 7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도부현민세와 시정촌세의 법인세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이월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 그리고,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통상의 법인세액과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세액이 동시에 존재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지방소비세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소비세의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하나, 주민세 성격인 도부현민세 및 시정 촌민세와 달리 도부현에서만 부과징수되는 조세이다. 따라서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국외로부터 과세대상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는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지방소비세 양도할'이라 하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방소비세 화물할'이라고 한다.

양도할의 경우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주소지가 소재하는 도 도부현이 납세지가 되며 법인인 경우 그 본점 등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이 납세지가 되나, 화물할의 경우 인격에 관계없이 당해 수입재화가 인수되는 보세구역이 소재하는 지역의 도도부현을 납세지로 한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납부할 세액은 과세표준인 소비세의 납부할 세액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지방소비세액은 도도부현간의 청산이 완료된 이후의 금액 중 1/2을 시정촌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up>16)</sup> 상술한 몇몇 공제대상금액이란 ① 법인세액으로부터의 이자 및 배당과 관련된 소득세액공제, ② 법인세액으로부터의 외국세액 공제, ③ 허위기장으로 인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공제, ④ 해산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부터의 소득세액공제 등을 의미함

<sup>17)</sup> 이밖에도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법인세할의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때에 ①외국납부세액 공제, ②허위기장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 ③이자할세액 공제, ④이전가격세제 의 적용에 따른 공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순차대로 납부할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 법인세할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④ 사업세

일본에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부현세로서 사업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세는 납세의무자의 인격에 따라 개인사업세와 법인사업세로 구분된다. 즉 개인사업세의 경우 개인사업세의 과세대상인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과징수하며, 법인사업세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모든 법인에게 부과징수되는 조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세는 물품판매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보험업 등의 제1종 사업과 축산업과 수산업 등이 포함되는 제2종 사업 및 의료업·마사지업·변호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제3종 사업에 대하여 과세한다. 즉 제1종 사업은 주로 상행위와 관련된 업종이며 제2종 사업은 축산업과 수산업이 포함되며, 제3종 사업은 주로 개인의 인적용역관련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1종 사업에 대하여는 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제2종 사업과 제3종 사업에 대하여는 각각 4%와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안마업과 마사지업 등에 대하여는 그 영세성을 고려하여 3%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도부현은 표준세율의 110%를 한도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사업세는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단체나 법인과세의 신탁인수를 담당하는 개인 등에 대하여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각 업종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전기공급업·가스공급업·생명보험사업 및 손해보험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외의 법인은 각사업연도의소득(즉,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적용세율을 결정하고 세액을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사업세은 각각의 업종과 외형에 따라 5%·7.3%·9.6%의 3단계 누진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고 있는바, 당해 표준세율을 120%를 한도로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일본의 고정자산세는 토지와 가옥 및 각종 상각자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당해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에서 그 고정자산의 가치에 근거하여 매년 1월 1일에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재산세이다.

고정자산세는 과세대상인 고정자산이 대부분 당해 지자체에 소재하므로 보편성의 원칙에 부합하며, 고정자산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지아니하므로 세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부담이 고정자산 소재지의주민에게 귀착되므로 응익원칙에도 적합하다. 고정자산세는 1.4%의 표준세율 또는 최고 2.1%의 탄력세율(즉, 표준세율의 50% 범위)을 적용할 수 있으며, 매 3년에 1회토지와 가옥에 대한 시가평가를 통해 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와가옥 및 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이 각각 30만엔·20만엔·15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용디 또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감액하거나 세액을 경감하는 등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고정자산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각자산이란 회사나 개인이 공장이나 상점 등을 경영하거나 주차장 또는 아파트 등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사업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구조물·기계·기구·비품 등의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광업권·어업권·특허권 등의 무형자산과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 등은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바,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인 상각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전제로 한다.

- ① 토지나 가옥 이외에 회사나 개인이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자산일 것
- ②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감가상각액 또는 감 가상각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산일 것
- ③ 무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서 자동차 및 경자동차가 아닐 것

또한 상각자산의 경우 매년 1월 1일 상각자산의 소유자가 과세대상 상각자산의 소재지·종류·수량·취득시기·취득가액·내용연수·견적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신고가액이 상각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한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는 시정촌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는 고정자산세와 성격이유사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과세표준·납부방식 등에 있어서 고정자산세와 동일하지만, 고정자산세가 과세되는 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세는 토지와 주택의 과세표준에 0.3%의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은 3년에 1회 시가평가로 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⑥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는 도부현세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유통세의 성격을 가진다.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 및 가옥(주택과 건물을 의미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가옥의 증축이나 개축 등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동산취득세를 과세하며, 부동산의 취득에는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매매·교환·증여·건축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이 포함된다는 점에서우리나라의 취득세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등 소유권의 형식적 이전이나 공익법인 등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7) 자동차세와 경자동차세 및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도부현세로는 자동차세가 있으며 시정촌세로는 경자동차세가 있는바, 모두 매년 4월 1일 현재 자동차와 경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00cc이상~2,000cc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연간 39,500엔의 정액세율을 적용하고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연간 7,200엔의 자동차세를 정액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해 차량의 연비 등에 따라 중과세하거나 경감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 자동차의 취득단계에서 과세하는 도부현세인 자동차취득세는 당해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8 년 3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단, 경자동차는 제외함) 취득가액이 50만엔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취득 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⑧ 특별토지보유세와 지방담배세 및 경유거래세

특별토지보유세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유효한 이용 및 공급을 촉진 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으 며 일정한 토지의 취득과 보유에 대하여 과세한다. 보유분 특별토지보유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 후 10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정촌에서 과세하는바,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1.4%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고정자산세와의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해당해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취득분 특별토지보유세는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지 시정촌에서 과세하는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의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취득세와의 중복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취득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지방담배세(都道府縣 담배세)는 제조담배의 제조자 및 특정판매업자 또는 도매판매업자가 제조담배를 소매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한 제조담배에 관한 담배세를 당해 소매판매업자의 영업소 소재 도도부현에서 그 담배를 판매한 도매판매업자 등에게 관세하는 지방세이다.

한편, 시정촌담배세는 제조담배의 제조자 및 특정판매업자 또는 도매판매업자가 제조 담배를 소매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한 제조담배에 관한 담배세를 당해 소매 판매업자의 영업소 소재 시정촌에서 그 담배를 판매한 도매판매업자 등에게 관세하는 지방세이다. 양자 모두 제조담배 1,000본을 과세표준으로 정액과세하고 있다.

경유거래세는 특약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경유의 거래에 애하여 그 수량을 과세표 준으로 경유의 납입지 소재 도도부현(都道府縣)이 과세하는 소비세이며 당해 경유거래를 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유거래세에 대하여는 1kl당 일정 금액을 정액세율로 과세하며, 당해 경유거래를 행하는 도매업자나 특약업자 또는 기타 징수에 편리한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하여 거래단계에서 과세한다.

## ⑨ 기타의 지방세

이밖에도 일본의 지방세로는 도부현세로서 광구세·수렵세·수리지익세·광산세 등이 있으며, 시정촌세로는 입탕세·수리지익세·공동시설세·택지개발세 등이 있으나, 세수입이 미미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원의 보편성이 미미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도부현세인 지방세로서 광산세와 광구세의 납세의무자는 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자 및 광구의 설정허가를 받은 광업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수렵세와 수리지익세는 수렵자 로 등록한 자 및 수리사업으로 이익을 획득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정촌세인 지방세로서 입탕세와 수리지익세는 광천욕장을 이용하는 자와 수리사업으로 이익을 획득하는 자를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시설세와 택지개발세는 공동작업장 등의 사업자 및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총무대신(總務大臣)과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여 새로운 세목을 설치할 수 있는바, 이를 법정외세라고 하며 보통세로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경우는 법정외보통세라 하고 목적세로서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외목적세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에서는 도입하지 아니한 제도로서 일본의 대표적인 법정외세로는 핵연료세·산업폐기물세·모래채취세 등이 있다.

# 3) 현행 일본의 지방세 조세감면제도

## (1) 지방세 조세감면의 법원성

일본의 헌법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 의회가 제정하는 조세조례로 지방공공단체와 주민과의 과세관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 하여 일본 지방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공공단체는 공익상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과 세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익에 근거 한 지방세의 과세면제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공단체가 당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공익에 기초한다면 과세권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바, 이를 위하여는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방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예컨대, 도쿄都 조례 제134조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고정자산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 ①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보조를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할 고정자산세 관련 고정자산에 대한 감면
- ② 공익을 위해 직접 전용하는 고정자산세 과세대상 고정자산
- ③ 都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서 재해 또는 기후불순으로 인해 수확이 현저하게 감소한 논밭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감면
- ④ 위의 각 호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규칙에서 정하는 고정자산세 과세대상 고정자 산

즉 도쿄都에서는 일본 헌법과 지방세법 및 도쿄都 조례에 근거하여 상술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쿄都에서 관련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천재지변, 생계보조 및 공익을 위해 전용하는 고정자산'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조례를 제정하고 감면의 원칙과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하는 방식을 통하여 법원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일본의 지방세 감면의 유형과 근거

일본의 지방세법 및 각급 자치단체의 지방세조례에서는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크게 비과세·과세면제·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모두 비과세와는 달리 지방자 치단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일본의 세법학자들은 지방세의 감면을 '지방공공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가 규정하는 부분에 따라 일단 과세권을 행사한 결과 특정 인문에 대해 발생한 납세의무를 당해 납세의무자의 담세력 감소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과세권자인 지방공공단체 스스로가 그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소멸시켜 납세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8) 또한 지방세의 비과세를 '특정한 자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하여 법률로 과세물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처음부터 납세의무를 성립시키지 않는 조치'라고 정의하면서, 국세와 마찬가지로 당해 지역차원에서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비과세로 해석하고 있다.19)

지방세의 과세면제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지방단체가 공익목적 상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일정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감면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비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20) 따라서 지방세의 감면이든 비과세이든 혹은 과세면제이든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일부 혹은 전부를 해제시켜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과세는 당초에 법률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자체를 배제하고 있으나 과세면제는 기왕에 성립된 납세의무를 후발적 사유 등에 의해 그 이행을 전부 면제하는 것이며, 감 면의 경우 역시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 중 일부의 이행을 면제하는 방식을 통해 조세부담

<sup>18)</sup> 江原(2001. pp.45)

<sup>19)</sup> 石島(2001, pp.24)

<sup>20)</sup> 首藤(2002. pp.112-pp.113)

을 경감해주는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지방세의 감면·비과세·과세면제 모두는 반드시 헌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그 법원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헌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절차적 또는 법원성의 정당성을 보장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조례제정을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입법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학자는 ①감면조치 등의 정책적 목적이 합리적인지 여부, ②그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당해 조치가 유효한지 여부, ③지방자치단체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세원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부동산취득세와 고정자산세 관련 감면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1)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 ①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②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부동산
- ③ 학교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한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및 유치원에서 교육 또는 보육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 ④ 신용보증협회가 신용보증협회법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확가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세의 경우.

- ① 생계보조 이외의 보조를 받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고정자산,
- ② 무료 또는 저가 진료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하는 병원 및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한 문화재
- ③ 주택공급공사가 소유하는 임대주택과 공해처리시설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시설
- ④ 보통 공중목욕탕 사업으로 사용되는 가옥의 부지 및 요양취급기관 등이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가옥 등

<sup>21)</sup> 江原(2001. pp.49-pp.50)

요컨대, 일본에서는 헌법과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당해 지역 내에서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거나 시행중인 세목에 대한 감면·비과세· 과세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복과세문제 또는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상존하지만, 지방세조례를 통해 당해 지역에서 감면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를 감면·비과세·과세면제하는 때에는 이와 같은 조세부담의 경감조치에 대한 합리성과 정책목적성 및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쿄都 등의 지방세조례 규정을 참고로 보면 일본은 현재 상술한 법원성과 공익성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주로 공공의 목적이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 (3) 도쿄都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주요 내용

도쿄都도 지방세 감면제도는 크게 ①재해에 의한 손해를 받은 경우, ②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를 받은 경우, ③납세자 또는 부양친족이 장애인인 경우, ④의료비 등의 과다지출이 있는 경우, ⑤피수용부동산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5가지 분야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표-32) 도쿄도의 지방세 감면 내용 요약

감면 취지	감면 내용	감면세목
재해에 대한 감면	풍수해, 지진 또는 재해 등이 있는 경우 일단 과 세된 지방세 중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 금을 제외하고 정도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함.	

생 활보 호법에 의한 감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부조를 받는 자에 대한 감면	-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감면신청하여야 함 - 도민세(개인) - 사업세(개인)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 생활부조를 받는 자와 동일 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소유한 것도 포함됨
장애인에 대한 감면	1)본인 또는 부양친족이 장애인인 경우 2)하지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감면 3)감면요건 소득액이 370만엔 이하일 것 장애로 실생활상 특별경비가 지출될 것	- 사업세(개인) - 사업세(개인), 자동차세
의료비 과다 지출감면	1)납세자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2)공제 또는 감면의 조건 소득세·주민세 : 10만엔과 소득금액×5%중 적은 금액이 의료비보다 적을 것 개인사업세 : 소득액×20%-25만엔이 의료비보다 적을 것	- 소득세, 주민세, 사업세(개인)
공공사업용 부동산 감면	1)공공사업용에 공하는 부동산을 수용 또는 양도한 날부터 2년 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대체부동산 고정자산평가액에서 피수용부동산 고정자산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경감함.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공공사업용에 공하기 위해 부동산 수용후 보상금 수령 - 공공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공공사업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 공공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수용 또는 양도한토지상의 건축된 가옥에 대하여 이전보상금수령 - 지방공공단체에게 양도하는 토지상의 건축된가옥에 대한 이전보상금수령 2)공공사업용에 제공되기 위한 부동산이 수용될 것을 예정하여 대론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대체부동산가격에 세율을 적용한 가액에서피수용부동산가격에 세율을 적용한 가액에서피수용부동산가격에 세율을 적용한 가액을 차감한금액을 경감함. 이 경우 감면요건은 위의 1)과 동일함	- 부동산취득세

도쿄都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비과세제도와는 달리 그 적용 지방세목이 적으며 공공목적의 구현과 관련된 감면이 많지 않지만, 경제적 약자, 불가항력의 재해, 장애인, 과다한 의료비지출 등에 대하여 폭넓게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표-33〉과 같다.

## (4) 시사점

전술한 도쿄都도 지방세 감면제도를 바탕으로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주는 시사점은 크 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방세목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과

세·감면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용에 있어 우리나라와 달리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용이 보장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운용상 황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감면정책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둘째, 일본의 경우 비과세·감면을 시행함에 있어 그 구현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바,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출세액의 일정부분의 납세의무 이행을 배제하는 세액경감방식이 주된 감면방식인데, 일본은 과세표준을 감액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감면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처럼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의 대상이 다소 과도하게 많다는 문제가 보이는바, 대부분이 공공단체 및 특정법인 등이 해당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한번 도입된 감면대상이 준영구화되는 유인이 강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감면대상이 되는 단체 등이 국가 정책목적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문제점이 보인다.

# 나.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 현황

1) 공공성 등을 고려한 비과세

## (1) 개요

일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본 적십자사 등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공공의 성질을 갖는 특정시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본 국민에 대한 행정의 주체로 보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당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적십자사와 같은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도 당해 비영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단체를 비과세대상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묘지 및 운하용지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관련 지방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비과세 대상 지방세

우선 일본의 지방세법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과세대상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도부현민세·시정촌민세·사업세 등을 비과세한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부동산취득세·자동차세·고정자산세· 경자동차세·특별토지보유세·자동차취득세·사업소세 및 도시계획세 또한 비과세하고 있 다.

이밖에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대부자산이나 공항용자산 등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세를 대신하여 국유자산 등 소재시정촌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적십자사 등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당해 비영리단체 등을 비과세대상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도부현민세·시정촌민세·사업세 등을 비과세한다.

비과세대상 비영리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자산 중 당해 비영리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특별토지보유세·사업소 세 및 도시계획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 비영리단체 등이 보유 하고 있는 자산이라도 당해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공공시설로는 묘지·공공용도로·운하용지·수도용지·수해방지용지·담수지·제방 및 도랑 등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 및 그 용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특별토지보유세 및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사회정책을 고려한 비과세 및 감면

### (1) 개요

사회정책을 고려한 비과세 및 감면은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등의 정책목적에 의해지방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비과세하는 세목에는 주민세(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를 의미함)·사업세·자산세(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및자동차세가 포함된다.

### (2) 주민세(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사회정책을 고려한 비과세 및 감면은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등의 정책목적에 의해지방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의 규정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소득할(또는 균등할)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소득할 및 균등할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과세하며, 장애인·미성년자·노년자·과부(홀아비 포함)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125만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소득할 및 균등할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과세하나, 분리과세되는 퇴직소득의 소득할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균등할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합계소득금액이 시정촌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균등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35만엔에 본인과 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친족수의합계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소득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때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자의 경우산출된 금액에 36만엔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 (3) 사업세와 자산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

사회정책을 고려한 비과세 및 감면에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업세와 자산세 및 자동차세 또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른바 자산세에는 지방세법상의 부동산취 득세 및 고정자산세가 포함된다.

사업세의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의료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세의 과세표 준인 사업소득 산정시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의 료 관련 경비 또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 또는 갱생보호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고정자산과 생활보호법에 따른 보호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체장애자복지법에 따른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관련 부동산 취득세와 고정자산세를 비과세한다. 시정촌장은 또한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고정자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빈곤 등의 사유로 생활보조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촌 조례에 의거 고정자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 적십자사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구급차 및 이와 유사한 차량으로 도부현의 조례로 확정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주택정책을 고려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 (1) 개요

주택정책을 고려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는 부동산취득세와 고정자산세 등 이른 바 자산과세에 대한 세목이 중심이 된다.

부동산취득세의 경우 법률에 규정한 특정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한 경우에 대한 감 면규정을 두고 있으며, 고정자산세 역시 특정 주택 및 관련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부동산취득세의 감면

부동산취득세는 주로 주택 등의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한 공제 또는 부동산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존주택에 대하여도 신축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부동산취득세에 대하여는 3%의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축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이  $50m^2$ 이상  $240m^2$ 이하인 경우(임대맨션 등은 1구획당  $40m^2$ 이상  $240m^2$ 이하)인 경우 당해 신축주택가액에서 1,200만엔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 ①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②연면적이  $50m^2$ 이상  $240m^2$ 이하일 것, ③목조경량철골주택의 경우 신축 후 20년 이내일 것, ④철근 콘크리트주택은 건축 후 25년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때에는 각각의 신축시기에 따라 최저 350만엔(1981.06.30. 이전 신축)~1200만엔(1997.04.1. 이후 신축)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축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취득가액에서 150만엔 또는 신축주택의 바닥면적의 2배  $(200m^2)$ 를 한도로 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 감면규정은 취득한 토지에 3년 이내에 특례적용대상 주택이 신축된 경우와 특례적용대상주택의 신축 후 1년 이내에 그 부지를 취득한 경우, 그리고 신축미사용 특례적용주택 및 그 부지를 주택신축 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밖에도 기존주택의 부지를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도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토지와 건축으로 인한 가옥 등의 취득 및 기타 가옥의 취득에 대하여는, 당해 취득가액이 각각 10만엔(토지), 23만엔(가옥신축 등), 12만엔(기타의 가옥) 이하인 경우 부동산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고정자산세의 감면

고정자산세의 경우 아래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세액산출에 관한 경감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용지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택용지가격의 1./3로 간주하며,  $200m^2$ 이하의 소규모 주택용지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의 경우 당해 주택용지가격의 1/6로 간주한다.

이밖에도 신축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독립적으로 구획된 하나의 주택을 의미)으로 바닥면적이  $50m^2$ 이상  $280m^2$ 이하인 경우, 고정자산세가 처음으로 과세되는 연도로부터 3년간  $120m^2$ 를 한도로 납부할 세액의 1./2을 감면한다. 또한 신축한 중고층 내화건축주택으로서 상기 요건(바닥면적이  $50m^2$ 이상  $280m^2$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고정자산세가 처음으로 과세되는 연도로부터 5년간 바닥면적  $120m^2$ 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2을 감면한다.

# 4) 산업정책 및 교통정책을 고려한 비과세 및 감면

#### (1) 개요

일본에서는 산업정책 및 교통정책을 고려한 지방세의 감면에 있어서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이 아니라 고정자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산업정책 관련 지방세의 감면의 경우 주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인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세감면을 부여하고 있다. 즉 선박의 경우 선박톤수와 선박의 용도에 따라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교통정책의 경우 철도 및 철도사업자의 철로설비와 철도차량 등의 사용연수에 근거하여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과세하고 있다.

### (2) 산업정책을 고려한 비과세 및 감면

전술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고정자산 세의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세우대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톤수가 500톤 이상인 외항선박은 그 가격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외항선박으로서 직전 연도 중 톤세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무역선으로 취항한 일수가 총 취항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가격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고정자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외항선박(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으로 총톤수 45톤 이상~90톤 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가격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하며, 내항선박에 대하여는 선박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고정자산세를 과세한다.

한편, 국제노선 전용으로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 항공기 가격의 1/15 금액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한다.

## (3) 교통정책을 고려한 비과세 및 감면

일본에서는 교통정책과 관련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 철도 및 철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철도 관련 설비와 객차 등에 대하여 당해 철도사업 관련 설비 및 객차에 대한 고정자 산세의 과세표준을 감액하거나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조세우대를 부여하고 있다.

철도 및 궤도의 부설 또는 교량의 신설 및 개량으로 부설된 노선설비 등의 경우, 고정 자산세가 최초로 부과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당해 노선설비 등의 부설 또는 신설한 노선설비가액의 1/3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후 5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당해 부설 또는 신설한 노선설비가격의 2/3를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새로운 철도노선의 건설에서 입체교차로 관련 노선설비 중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정자산세가 최초로 부과된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당해 노선설비가액의 1/6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후 5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노선설비가액의 1/3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나 궤도를 입체교 차로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자산세를 비과세하며,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신규 제작한 객차 등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고정자산세가 최초로 부과된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당해 객차가액의 1/2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경영자가 하천사업에 필요한 교량을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터널의 신설로 인해 부설한 선로설비 등은 고정자산세가 최초로 부과된 연도부터 5년간 당해 설비가액의 2/3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후 5개 사업연도 간에는 그 설비가

액의 5/6를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한다. 다만,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 가 도시구역 내에서 철도궤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도 또는 육교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때에는 고정자산세를 비과세한다.

# 5) 공해정책을 고려한 비과세 및 감면

## (1) 개요

일본에서는 또한 공해정책을 고려한 지방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하여는 주로 금속찌꺼기나 오폐수처리시설 및 산업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산업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관한 감면, '오폐수 및 오염토지 정화시설' 등에 관한 감면, '매연 및 연소개선 시설' 등에 관한 감면 및 '가축류의 분뇨처리시설'과 '우량갱신투자설비' 관련 고정자산세의 감면 등환경오염방지 및 오염된 환경복구를 위한 조세감면이 주로 규정되어 있다.

# (2)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감면

산업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방세의 조세감면으로는 '쓰레기 처리시설 및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폐유와 폐플라스틱류 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관한 고정자산세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및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휘발류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시설'과 '토양오염제거시설'을 제외한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가액의 1/3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폐석면 등을 융해하거나 융합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시설가액의 1/6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의제하고 있며, '폐유와 폐플라스틱류 처리시설'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가액의 2/3를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오폐수 및 오염토지 정화시설 관련 감면

오페수 및 오염토지 정화시설 관련 조세감면으로는 '갱수와 폐수 및 광재와 광연 처리 관련 시설',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설치한 하수처리시설', '지하수의 수질정화시 설'. '토양 오염제거 시설' 및 '오수 및 폐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고정자산세 감면으로 구 성된다,

'갱수와 폐수 및 광재와 광연 처리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가액의 1/3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며,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은 그 시설 가액의 2/3를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다. 또한 '지하수의 수질정화시설', '토양 오염제거시설' 및 '오수 및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시설가액의 1/2과 1/3 및 1/6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연 및 연소개선 시설 관련 조세감면으로는 '매연처리시설', '질소산화물 발생 억제 및 현저하게 절감하기 위한 연소개선 설비', '지정물질의 배출 및 비산억제를 위한 시설', '다이옥신류의 처리시설', '휘발류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 시설' 등에 관한 고정자산세 감면으로 구성된다. '매연처리시설'과 '질소산화물 발생 억제 및 현저하게 절감하기 위한 연소개선설비'에 대하여는 각각 그 시설가액 및 설비가액의 1/6과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물질의 배출 및 비산억제를 위한 시설', '다이옥신류의 처리시설', '휘발류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 시설'에 대하여도 각각 당해 시설가액의 1/3과 1/2 및 1/6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이밖에도 '가축류의 분뇨처리시설' 및 '우량갱신투자설비' 등에 관한 고정자산세에 대한 감면규정도 있다. 가축류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가액의 3/4를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며, '우량갱신투자설비'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설비의 갱신에 대한 감면을 의미하는바 당해 투자설비가액의 2/3를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 6) 물가정책을 고려한 비과세 및 감면

### (1) 개요

물가정책을 고려한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크게 지방세 독자적인 경감규정과 국세의 경감에 부수되는 지방세의 경감으로 구분된다. 지방세 독자적인 경감은 주로 농 업과 교통정책 관련 지방세의 경감을 의미하며, 국세에 부수되는 경감은 주민세(도부현 민세, 시정촌민세) 및 사업세 경감으로 인수부가세인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이 경감되 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2) 지방세 독자적인 경감

일본의 물가정책을 고려한 지방세의 조세감면 중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농업에 관한 감면'과 '교통정책에 관한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농업 및 임업에 대하여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세를 경감할 수 있으나, 전술한 농업은 개인 및 농업생산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농사조합법인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3) 국세에 부수되는 경감

일본의 물가정책을 고려한 지방세의 조세감면 중 국세의 경감으로 인해 응당 지방세가 경감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처럼 국세의 경감으로 인해 당연히 경감되는 지방세로는 주민세(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와 사업세가 포함된다.

주민세(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법인세할도 함께 감면되는 경우와 소득세법과 조세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소득세의 총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도 함께 감면된다.

또한 사업세의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계산의 경감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경감조치가 지방사업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세의 경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7) 기타 세제상의 이유에 의한 비과세

이는 어떠한 과세대상이 다른 명목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세제상의 이유로 비과세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구체적으로 아래에 열거하는 몇 가지의 경우는 다른 세 금이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세 등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물 채굴사업의 경우 이미 광산세가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세는 비과세하며, 자동차 및 경자동차 등은 각각 자동차세와 경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되기 때문에 고정자산 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의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과세되는 경유인수세의 경우, 당해 경유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경유인수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예컨대, 선박의 동력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해상보안청 등이 설치관리하는 항로표지등의 전원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철도 궤도용 차량을 동력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사 경운기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자

기제조업을 영유하는 자가 도자기의 제조공정에서 도자기를 굽기 위한 가마의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소유하는 고정자산으로 국유자산 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사점

## 1) 다양한 감면방법을 이용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일본의 경우 비과세·감면을 시행함에 있어 그 구현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이는 바, 단순한 세액감면방식이 아닌 과세표준을 감액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감면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신축주택가액에서 1,200만엔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주택용지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의 경우 당해 주택용지가격의 1/3로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축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는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신축주택에 한하여 고정자산세가 최초로 과세되는 연도로부터 3년간 납부할 세액의 1/3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로 과세대상 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건축비용 등을 많이 지출 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곤란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감면방식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일본의 지방세 세목 중 소득과세에 속하는 것으로는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소득할(법인할과 개인할 및 주식양도소득할·이자할·배당할 포함), 도부현세에 속하는 사업세(개인사업세와 법인사업세) 등이 있는바, 현행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에서는 소득과세에 대한 감면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인사업세의 감면 의료비과다지출에 따른 개인사업 소세 감면 등과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도 도부현민세 소득 할과 시정촌민세 소득할에 대한 비과세가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밖에도 국세인 법인세의 감면으로 인해 자동감면되는 도부현민세 법인세할도 큰 틀

에서는 소득과세에 대한 직접감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조세감 면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직접감면이 간접감면보다 그 정책효과가 우월하다는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소세의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별조치법 등에 의거 과세소득계산의 경감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경감조치가 지방사업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실상 지방세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감면의 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다양한 정책목적의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또한 다양한 정책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산업 정책 및 교통정책·환경보호 및 오염예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포함되다.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에는 생활보호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감면, 장애인·미성년자·노년자·과부로서 직전 사업연도소득금액 125만엔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거목적 주택 관련 부동산취득세에 대한 감면세율(3%) 적용 등이 포함된다.

산업정책 및 교통정책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로는 총톤수가 500톤 이상인 외항선 박과 국제노선 전용 항공기에 대한 고정자산세 간주과세표준규정(이하, '과세표준 감액' 이라 함), 철도 및 철도사업자의 자가보유 설비와 객차에 대한 과세표준감액 및 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 및 오염예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조세감면제도에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과세표준 감액, 오폐수 및 오염토지 정화시설과 매연 또는 연소개선 시설과 설비에 대한 고정자산세 과세표준 감액, 가축류 분뇨처리시설 및 우량갱신투자설비에 대한 감면 등이 포함된다.

#### 4) 국세와 연동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국세의 감면제도와 연동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국세의 감면으로 인해 지방세 또한 그에 연동하여 감면되는 경우를 의

미하며,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효율 및 국세와 지방세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되는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 소득할의 경우 국세인 조세특별조치법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이 산출되기 때문에, 만일국세인 조세특별조치법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감면이 이루어지게되면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 역시 감면된다.

또한 사업세의 역시 국세인 조세특별조치법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계산에 대한 경감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경감조치는 응당 지방사업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조세감면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연동하여 시행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조세감면을 통한 정책지원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부과·징수되거나 감면되는 상황에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납세협력비용과 과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IV.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1.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가. 공익적·공평성 목적의 감면정책 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혜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관련 규정 또한 직접적인 감면이 아닌 간접감면이 대부분이어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전국 공통적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뿐이어서 다양한 상황의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 나. 서울시 고유 정책 활성화 및 지원정책 부족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정책과제와 이상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상호간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따라 조세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지역특색이나 경제발전 또는 산업정책 등에 부합하는 감면규정으로는 "공연장에 대한 감면"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감면조례와 비교할 때 보편적인 감면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서울시의특성화 또는 경제발전 등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일자리 창출·문화관광 등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이러한 중점정책 관련 조세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소유하고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경우 양자 모두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간접감면수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아직까지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능력과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 다. 미래가능환경 대비정책 부족

대부분의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던 시기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최근의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의 산업구조의 변화상황 및 환경오염원인 등을 고려하여 부족하거나 미비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조세지원(조세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라. 감면방식의 다각화 및 효율화 미흡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개의 감면에 관한 규정 중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13개 항목이 모두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개발세 등 각종 재산에 대한 보유과세 관련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효과가 직접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지방세의 감면은 특정 소득의 가득자에게 직접감면하는 방법과 어떠한 과세물건의 취득자(보유자)에게 당해 과세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간접감면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감면금액만큼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므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만 후자의 경우 감면금액이 그 과세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매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다.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서울시의 과세환경과 세정수준 및 납세주체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거의 간접감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률적인 감면방법은 지방세 감면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지방세의 감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직접감면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감면방법을 다양하게할 필요가 있다.

#### 마. 감면대상 세목의 특정화 및 집중화

감면대상 세목의 특정화 및 집중화는 세원이 보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방세의 감면이라는 조세우대가 기득권화 또는 장기화 되어 그 정책효과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 2. 중국과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사점

가.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와 감면방법

중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는 바, 중국에서는 과학기술분야·환경보호·에너지절약·외자유치 등에 대하여 거시적·종합적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방세의 전 분야에서 세액공제·과세표준감액등 다양한 감면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중국에서는 과학기술(연구개발)·기본 생활보장·저소득계층 지원·의료위생·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문화사업·교육 및 취업보장·외자유치·기초건설사업 등 총 9가지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지방세 감면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중장기 거시정책에 입각하여 당해 정책목적의 달성하는데 필요한 세목을 모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정책목적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감면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컨대,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의경우 기업소득세의 지방정부 귀속분(납부세액의 40%)·개인소득세·영업세·방산세·성진토지사용세·계약세 등 과학기술(연구개발)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지방세 조세부담을 완전히 면제한다. 또한, 중국의 감면규정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정치지도자의 교체 사이클에 기초하여 제정되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안정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매우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의 감면방법으로 세액감면·세액공제·추가세액공제·과세표준공제·과세표준감액·감면세율·비과세 등을 각세목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공제의 경우 주택에 대한 부동산취득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당해 신축주택가액에서 1,200만 엔을 공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지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주택용지가격의 1/3로 감액하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신축주택에 한하여 고정자산세가 최초로 과세되는 연도로부터 3년간 납부할 세액의 1/3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로 과세대상 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건축비용 등을 많이 지출하여발생하는 경제적 곤란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감면방식을 통하여지방세 감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경우 14개의 감면사항 대부분이 보편적이고 단순한 취

득세·재산세 및 재산의 보유관련 세제로만 감면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감면방법도 단순한 세액감면과 감면세율 적용으로만 구성되어 다양한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규정이 서울시의 거시정책이나 산업정책과 유리되어 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나아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재산의 보유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감면의 효과를 명확히 인식 또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서울시세 감면방법은 각 납세의무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감면 세율(또는 면제)만 대부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획일적인 감면제도 하에서는 감면의 수혜자인 납세의무자도 시세감면에 따른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 나. 소득과세 중심의 직접적인 지방세 감면

중국과 일본은 다양한 감면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소득에 대한 감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감면정책의 효율을 제고하고 있는바, 중국 각 지방정부는 당해 지역의 중점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기업소득세 세수입의 지방정부 할당액(기업소득세 납부세액의 40%)을 과학기술분야·환경보호·에너지절약·외자유치 등 중점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상술한 지방정부 세수입에 대한 감면 이외에도 과학기술·환경보호·에너지절약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세액공제(지출액의 150%)·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에너지절약설비 등 투자액의 10%)·반도체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의 50%) 등의 혜택을 공유한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전문가국의 심사허가를 거친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 최장 5년간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교국적의 중국교포에게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외국인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소득할(법인할과 개인할 및 주식양도소득할·이자할·배당할 포함) 및 도부현세에 속하는 사업세(개인사업세와 법인사업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인사업세의 감면 의료비 과다지출에 따른 개인사업소세 감면 등과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

세 감면에 있어서도 도부현민세 소득할과 시정촌민세 소득할에 대한 비과세가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밖에 국세인 법인세의 감면으로 인해 자동감면되는 도부현민세 법인세할도 큰 틀에서는 소득과세에 대한 직접감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소세의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별조치법 등에 의거 과세소득계산의 경감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경감조치가 지방사업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조세감면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직접감면이 간접감면보다 그 정책효과가 우월하다는 관점에서 시행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지방세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소득과세중심의 지방세 감면의 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독자적인 감면권한이 부여된 이래 현재까지 오로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감면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발휘되지 못하고, 시세감면규정이 기득권화되거나화석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취득세·재산세 등 보편적 세원만을 활용하여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세감면에 따른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득세와 재산세 중심의 시세감면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소득세를 중심의 직접적인 시세감면으로 전환해야 하는바, 특히 사회적 협동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시세감면의 경우 감면세목의 전환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지방세 감면

중국과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모두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정책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는바,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시정책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의 정책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매 5년을 주기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5개년 규획(이하, 5개년 규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오고 있는바, 지방정부 또한 5개년 규획에 근거하여 당해 지방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가장 최근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IT산업·벤처투자·전기자동차·반도체산업·무인기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이 집중적으

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에 서는 어떠한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조세감면정책이 결정되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정책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역시 지방세 감면제도를 다양한 정책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산업정책 및 교통정책·환경보호 및 오염예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가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에는 생활보호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감면 및 장애인·미성년자·노년자·과부로서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 125만엔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등을 규정하여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정책 및 교통정책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로는 총톤수가 500톤 이상인 외항선박과 국제노선 전용 항공기에 대한고정자산세 간주과세표준 규정과 철도 및 철도사업자의 자가보유 설비와 객차에 대한과세표준감액 및 비과세 등을 규정하여 산업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환경보호 및 오염예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으로 산업페기물처리시설에 대한고정자산세 과세표준 감액, 오페수 및 오염토지 정화시설과 매연 또는 연소개선 시설과설비에 대한고정자산세 과세표준 감액, 오페수 및 오염토지 정화시설과 매연 또는 연소개선 시설과설비에 대한고정자산세 과세표준 감액 등의 규정을 두어 환경보호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산업정책 및 교통정책·환경보호 및 오염예방정책과 관련한 감면규정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몇몇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거시적인 전략목표나 정책방침을 지원하는 규정은 없다. 예컨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오히려 재산권과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감면효과가 지극히 미미하여 정책효과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서울시의 특정 산업정책이나 거시정책을 지원하는 시세감면규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교통정책과환경보호정책 관련 규정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으나 관리가부실하여 곧 폐지될 예정이고,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시세감면규정도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엄격한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세 감면조례는 서울시의 거시정책이나 산업정책

및 사회보장정책 등과 현저하게 유리되어 있어, 설령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목적을 수립하여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세 감면조례를 개선하지 아니하면 시세감면을 통한 정책지원은 요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조세감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중국에서는 과도한 조세감면의 남발로 인한 재정악화와 조세감면을 이용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관리판법"이라는 조세가면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세감면관리판법"에 따르면 조세감면유형을 등록류와 허가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바, 사전심사의 경우 조세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의 경우 조세감면의 적용이후 적용요건의 변화여부를 동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조세감면관리판법"에서는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법률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만일 관련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태 또는 부작위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경우 각 조문별로 감면대상자의 감면요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당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감면요건의 변화여부를 누가 판정해야 하는지 또 그 변동사항을 언제, 어느 때, 누가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가 부작위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대한 처벌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물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상술한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서울시세 감면조례로서의 권위와 납세의무자 및 과세권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꼼꼼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다.

## 3.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가. 개선의 원칙과 방향

비과세·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은 공익목적·정책목적·공평목적·과세자주목적 및 기타의 합리적인 정책목적에 기초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 1) 공익적 목적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공익단체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에 있지 않고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 일반과세대상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 비과세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영리기업과 공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실체에 대한 고려가 미미하다.

## 2) 정책적 목적

지역의 경제개발이나 건설 경기 또는 투자 진작을 목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구분산·지역균형개발·수출증대·기타 특정지역의 고유한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등도 광의의 정책적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각급 정부기관에서 특정 지역의 경제개발 또는 투자유치 및 각종 공공정책목적을 달성과 이해관계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차별적인 조세감면을 부여하는 것 또한 정당화 될 수 있다.

#### 3) 공평성 목적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또는 재향군인 등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기본생활보장과 공평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세감면의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며 정당화 될 수 있다.

## 4) 과세자주권 목적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특성과 현실에 적합한 조세지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5) 소결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술한 공익적·정책적·공평성·과세자주권 등 지방세 감면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목적을 일탈하거나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지나치게 정책목적이나 공익목적에 경사되어 공평성이나 과세자주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평성이나 과세자주권을 견지하기 위하여 정책목적이나 공익목적이 중요한 감면사항을 중단하거나 폐지하여서도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 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부족
- ② 서울시의 중점정책의 달성에 부합되지 않음
- ③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효과 미미

결론적으로 비과세·감면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반드시 공익목 적성·정책목적성·공평목적성·과세자주성 등 비과세·감면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과세자주성의 경우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법원성에 기초하여 상급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만일 과세자주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체계와 법원성이 흔들리게 되면서 헌법가치와 조세법률 주의라는 기본원리가 훼손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술한 상반된 감면목적이 충돌하는 등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본전제인 공익목적과 정책목적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평과세와 재정수입조달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과 핵심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구체적 개선방안

1)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2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서울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2항과 동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에서 법문에서 어려운 표현이나 잘못된 표현 또는 혼란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부자연스럽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행	개정안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한다)		
현 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		

를 추징한다.

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한편, 동 규정이 위임조례의 감면확대금지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면 연혁 및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현황 등을 비교할 때 해당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확대금지의 범위가 확대해석되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요소를 제거하고 감면규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위해 동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사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현재의 방식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국 공통적인 감면 사항인 4급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행정비용 소요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동 규정의 지특법 이관 필요성의근거가 될 수 있다.

####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3조)

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

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조세부담 및 고용증대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료종사자 및 비의료종사자 모두 포함)에 대하여 법인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주민세 종업원분 등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3) 공연장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4조)

공연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대형 공연장 등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감면규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시세 감면조례 제5조의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관련 감면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공연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객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라는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5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최근의 감면추이를 분석해보면 현행 규정의 감면 정도가 낮거나 감면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법령의 연혁에 따르면 인사동 문화지구와 대학로 문화지구 모두 10년 이상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추가지정은 없었는데, 감면 추이를 보면 2011~2013년까지 평균 약 115건이던 감면건수가 2014년 이후 평균 44건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상 지역의 환경변화로 인해 감면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므로, 그 정확한 원인과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여 감면이 필요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있는 경우 새롭게 문화지구로 선정하여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

#### 5)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6조)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5년 말 도입된 이후 10년 넘게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비판 등이 반영되지 못한 채로 운영되어 장기화·기득권화 된 감면 규정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연간 56억 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이루어지며,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사실상 준조세에 대한 혜택까지 부여되고 있음에도 정책목적은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현실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혜택을 일몰제로 변경하고 실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의 감면혜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서민증세로 오인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조세감면이 아닌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울시의 개선계획을 보완하고 그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 가지 대안으로서 일반자동차에 대한 모든 혜택을 폐지하고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하여만 혜택을 주 는 방안은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감소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혜택을 감소시켜가면서 주행거리감축을 적용한다면 공해와 교통체증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 6)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7조)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은 5년 전인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31건과 1건의 감면실적이 있었을 뿐 2012년부터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동 규정이 임의조례가 아닌 위임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상위법에 의해 제한되어 그 운용이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세 감면조례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 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감면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조 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협의를 통해 위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면 현행 취득세에 관한 감면이외에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활용하여 신설기업에 대한 "3+3감면(3년 100% 감면, 3년 50% 감면)", 기존기업에 대한 "5+5(5년간 50% 감면)" 등 다양한시세감면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울시의 중장기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및 실업정책 등과 결합하여 적용대상 업종과 기술수준을 선정해야 하며 감면에 따른 고용효과와 고용유지효과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도 선행되야 한다.

#### 7)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8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1998년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감면규정으로서, 최근 3년간총 감면건수는 37건에 감면세액이 4억8천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20여 년간 서울시내 준공업지구의 투자환경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되어 왔음에도불구하고 서울시세 감면조례는 여전히 20여 년 전에 제정된 규정(도시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감면규정은 현행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와 향후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전향적이고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몇몇 준공업지구는 신규투자 감소 및 기존공장 이전등으로 슬럼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종합적 발전전략과 준공업지구 활성화정책을 고려하여 준공업지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우선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감면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예컨대, 교통 및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인재유치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당벤처타운과 중국 중관촌과학기술원구의 발전전략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기존 준공업지역을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전략이 수립된 이후에는 현행처럼 단순히 도시형공장 관련 취득세만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해당 발전전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종합적이고 전면적 인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8)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9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1994년 처음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정이지만 최근 5년간은 동 감면규정에 근거하여 감면된 사례가 1건도 없을 뿐 아니라, 서울시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례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감면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 규정은 당초 철거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해당 세목의 세액 자체가 미미하여 감면효과가 적고, 최근 5년간 감면실적도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이 새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규정비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 기간 및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속기간에만 감면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우선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신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때에 한시적 규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9)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11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감면금액이 크지 않지만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 지원의 공공성, 감면 대상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항목으로 판단된다.

동 규정의 직접적인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고려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시장상인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조 제12조의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감면규정과 연동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전통시장상인 등에 대하여 관련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100%(신규설립 및 신규가입자) 또는 50%(기존조합 및 기존조합원)를 감면하는 경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10)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라는 서울시의 정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에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영세한 수준이기 때문에이에 대한 감면실적조차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고령화·청년실업·소득양극화 등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그 정책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규정을 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단편적인 감면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이라는 서울시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득세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보유과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직접감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감면규정을 제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22)

이와 같은 보유과세와 소득과세에 대한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시세감면은 서울시세 감면조례 제7조와 제9조 및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sup>22)</sup>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최저세액을 인하하고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규정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1500035&wlog\_tag3=naver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음).

#### 11)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종전 조례의 경과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두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를 파악하여 감면대상 자가 존재할 때까지는 계속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 1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14조)

동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 이외에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문이 2016년에 신설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동 감면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조성이라는 특정 정책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규정을 제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단편적인 감면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등 보유과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직접감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감면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 감면규정은 위임조례에 속하기 때문에 우선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감면권한의 확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일이러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현 규정대로 시행되는 경우 매우 경직적이고 제한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정책지원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 13) 서울시 재산세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15조)

서울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11.1.1. 지방세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서울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25개 구청(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각의 감면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 간의 감면조례 규정이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조세공평을 훼손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각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의체를 조직하여 과도한 조세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고 중복적인 감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14)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감면(서울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 세액공제액의 차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감면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위임조례라 하더라도, 성격이 유사한 여러 전자고지·전자납부 방식에 대한 공제액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공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공제액을 조정하는 개선안으로서 우편송달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제액을 통일하고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23)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세금납부만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일 뿐 세금의 부과내역을 고지해야 하므로 우편송달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500원만 공제하고, 전자송달을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500원(30만원 미만), 2,000원(30만원 이상)을 공제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송달을 받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고지비용이 절감되었으므로 500원과 1,000원을 공제하고, 간편신고 · 납부방식 중 아직반영되지 않은 전자납부,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표-33) 송달 및 납부관련 세액공제 개선안

(단위: 원)

구분	자동이체	전자송달+ 자동이체	전자송달+ 전자납부	전자송달	앱설치+ 전자납부
현행	150	500	없음	젒음	险
개선안	500원	500/2,000	500/2,000	500/1,000	500/2,000

자료: 김태호(2015) 참조

결론적으로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 세비용절감 및 납세 편의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편송달비용 등 실비수준을 고 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 감면사항으로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공제금액과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위임조례이므로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sup>23)</sup> 김태호,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12.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지방세 감면제도를 분석한 후 그 시사점에 기초하여 현행 14개에 이르는 서울시세 감면규정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와 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등 6대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세감면조례를 분석하여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주요 주변국인 중국 및 일본의 세제와 지방세 감면제도를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개선에 유익한 양국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연구와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효율성 결여, 합리성 결여, 시의성 상실, 법원성 결여, 지방재정건전성 저해, 조문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파악한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공익적·공평성 목적의 감면정책이 부족하다는 점과 서울시 고유의 정책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과학기술 지원과 환경보호와 같은 미래가능환경에 대한 대비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결론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세제일반과 지방세 감면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바, 중국과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감면제도와 감면방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소득과세 중심의 감면규정을 제정하여 감면효과를 제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시적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과학기술분야·환경보호·에너지절약·외자유치 등에 대하여 거시적·종합적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감면의 전 분야에서 세액공제·과세표준감액 등 다양한 감면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에 대한 감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감면정책의효율을 제고하고 있는 바, 중국은 당해 지역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소득에 대한 지방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정책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세 감면을 활용하고 있는 바, 중국의 경우 각급 정부의 거시정책에 근거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다양한 정책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의 효과가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과 중국과 일본 주변국의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조문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세 감면조례는 공익목적·정책목적·공평목적·과세자주권 목적 및 기타의 합리적인 정책목적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납세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감면규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 규정을 지방 세특례제한법 규정사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조세부담 및 고용증대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인 등 의료기 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료종사자 및 비의료종사자 모두 포함)에 대하여 법 인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주민세 종업원분 등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공연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적절한 감면규정인 것으로 판단되나,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공연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은 대상 지역의 환경변화로 인해 감면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되므로, 그 정확한 원인과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여 감면이 필요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있는 경우 새롭게 문화지구로 선정하여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일몰 예정으로서 서울시에서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완하고 있지만, 한 가지 대안으로서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하여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5년 전인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31건과 1건의 감면실적이 있었을 뿐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행정자치부 등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임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일곱째,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최근 20여 년간 투자환경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20여 년 전 감면을 적용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준공업지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우선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감면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여덟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으로 판단되므로, 우 선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신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때에 한시적 규정으로 규정하 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홉째,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감면금액이 크지 않지만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 지원의 공공성, 감면 대상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항목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전통시장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고려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고령화·청년실 업·소득양극화 등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그 정책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규정을 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단편적인 감면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취득세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보유과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직접감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감면규정을 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열한 번째,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종전 조례의 경과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두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를 파악하여 감면대상자가 존재할 때까지는 계속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열두 번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동 조문이 2016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대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산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직접감면까지 종합적 감면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열세 번째, 서울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각 기초자치단체 간의 감면조례 규정이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조세공평을 훼손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울시가 각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의체를 조직하여 과도한 조세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고 중복적인 감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열네 번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치단체별 세액공제액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공제되고 있으므로. 우편송 달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제액을 통일하고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문헌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시간과 역량의 한계로 인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실제 조세감면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 참고 문헌 〉

## ■ 단행본

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2.

이성태·김도형·최세훈·오정록,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율곡출판사, 2015.

김태호,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 연구논문 및 기타

신기선, "지방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의 유의사항",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2015.3.

안전행정부, "2014 안전행정통계연보", 안전행정부, 2014

이동식, "해외지방세제도: 독일의 지방세제도", 지방세포럼 10권, 2012.

이선화·마정화, "해외지방세제도: 미국의 재산세제도: 뉴욕, 캘리포니아", 지방세포럼 20권, 2015.

전병욱, "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3.2.

정지선, "지방소득세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2015.3.

채종성, "기업담당자가 놓치지 말아야할 지방소득세 이슈",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2015.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진 지방자치제도: 독일". 선진지방자치제도 1권. 2012.

#### ■ 기타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 시도별 조례 감면율 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 시도별 세액공제액 비교".

- 서울시, 박진형 의원실 자료.
- 서울시. "공연장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
- 서울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
- 서울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추이(2013~2015)".
- 서울시,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세목별 감면 현황(2011~2015)".
- 서울시. "서울시 시세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1~2015)".
- 서울시. "서울시 시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2011~2015)".
- 서울시. "서울시 시세 징수액 대비 감면조례규정에 의한 감면율(2011~2015)".
- 서울시. "서울시 시세 비과세·감면 부문별 현황(2011~2016)".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재설계를 위한 공청회 자료" 서울연구원 보고서.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
- 서울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
- 서울시.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
- 서울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
- 서울시.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
-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추이(2011~2015)".

#### ■ 국외 참고문헌

-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2014.
- OTPA, Handbook of New York State and Local Taxes, OTPA, 2012.10.
- OTPA, Summary of Tax Provisions in SFY 2014-2015 Budget, OTPA, 2014. 4.
- OTPA, 2013-2014 New York State Tax Collection, OTPA, 2014. 8.
- 辻 本郷税理士法人, "2013年版税金ハンドブック", PHP研究所, 2012. 8.

#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

발 행 일 : 2016년 12월

발 행 처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발 행 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김경호

주관부서 : 입법담당관(입법담당관 배선희, 주무관 이수호, 입법조사관 최현종)

행정자치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입법조사관 김정덕)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3705-1170 FAX :02-3705-1486 (입법담당관)

전화) 02-3705-1200 FAX :02-3705-1393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과제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연구기관 : 한국재정학회

책임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정지선 교수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49. 양원빌딩 4층 한국재정학회

전화) 02-777-0128 FAX :02-777-0129

발가등록번호: 51-6110000-001359-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